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정책연구

이 형 복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정책연구

이 형 복



연구책임

- 이형복 /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연구보조

- 이상근 / 초빙연구원

연구보조

- 신현호 / 위촉연구원

목 차

I.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4
제3절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5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8
II.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1
제2절 선행연구와 본 계획의 차별성	22
I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27
제1절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적 이해	27
제2절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	31
제3절 유니버설디자인 국내·외 동향	33
제4절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규	48
IV.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의 현황 및 분석	55
제1절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분석	55
제2절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현황분석	56
제3절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분석	63
제4절 분석의 결과	70

V.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73
제1절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의 개념 정립	73
제2절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비전과 추진전략	75
제3절 실행을 위한 중점추진과제와 지원체계	77
제4절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추진 로드맵	94
VI. 결론 및 제언	107
■ 참고문헌	110
■ 부록	111
1. 교토시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조례	
2. 사람에게 친화적인 마을만들기 조례	
3. 대전광역시 Barrier Free 인증 현황분석	
4.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조사 설문지	

표 목 차

〈표 2-1〉 국내 선행연구의 주요사례	12
〈표 2-2〉 가로환경의 요소별 정비지침 체크리스트	15
〈표 2-3〉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가능 시설의 분류	16
〈표 2-4〉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시설의 분류	18
〈표 3-1〉 고령자를 배려한 마을조성의 종합적 추진사항	36
〈표 3-2〉 UD를 고려한 마을조성 종합적 추진	36
〈표 3-3〉 일본 주요 지자체별 주요 UD관련 정책 및 사업 일람	37
〈표 3-4〉 일본의 각 자치체별 시사점	46
〈표 3-5〉 미국의 법률과 가이드라인 사례	47
〈표 3-6〉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규	48
〈표 4-1〉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내용정리	58
〈표 4-2〉 유니버설디자인(BF인증) 신청기관 현황	60
〈표 4-3〉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조사 체계도	63
〈표 5-1〉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과 PPP의 가이드라인 키워드 추출	89
〈표 5-2〉 제시된 유니버설디자인 적합성평가항목 및 평가 체크리스트	90
〈표 5-3〉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로드맵 구상안	98
〈표 5-4〉 시범거리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	103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진행흐름	7
[그림 2-1] BF 인증업무체계	21
[그림 2-2] BF 인증신청절차	21
[그림 3-1]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의 발상의 차이	32
[그림 3-2] 미국과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사고의 차이	34
[그림 4-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구현 추진방향	55
[그림 4-2]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구현 사업 추진단계 ...	56
[그림 4-3]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건축물 부문	57
[그림 4-4] 설문대상자 주거지·성비	64
[그림 4-5] 설문대상자 연령대 비율과 업무의 연관성	65
[그림 4-6] 인식수준	65
[그림 4-7] 도시정책의 필요성과 필요사항	66
[그림 4-8]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수준 및 필요한 관련시설	67
[그림 4-9] UD적용 시설 확충필요성과 이유	68
[그림 4-10] 외국인 생활편리도와 다목적화장실의 용도변경	69
[그림 5-1]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도	74
[그림 5-2]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비전 및 추진전략	76
[그림 5-3] 프랑스 리옹시와 대전시 특화가로의 이미지	78
[그림 5-4] 부평시장의 지역마케팅 및 룩셈브루크 요새박물관	79
[그림 5-5] 브리스톨의 공공사인물	80
[그림 5-6] 유니버설디자인 제품과 WIN-WIN-WIN 컨셉	83
[그림 5-7] 경성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전시관	87
[그림 5-8]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따른 시민의 의무 (예시) ...	92
[그림 5-9]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5개년 계획 단계별 세부실천과제 구상(안)	96
[그림 5-10] 동구 계족로의 현황	100
[그림 5-11] 대덕구 중리길의 현황	102

제 1 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국·내외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은 고령화와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의 관점에서 배리어프리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제도 및 법제화 되어 왔음
- 저출산율, 인구증가, 인구이동 등의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와 도시공간구조 등의 사회적 다양성 및 문화적 욕구증가에 따라 인간 존엄성과 평등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의 경향이 나타남
- 세계적으로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에서 출발한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능력과 인간의 생애주기를 수용하는 디자인의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법제화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즉, 다양한 장애인, 노인, 여성, 저소득층,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계층이 관심을 받아 왔으나, 이러한 모든 것을 넘어 일시적인 장애상황에 처한 일반인, 언어로 인한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 등 나아가 각기 개성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은 그 범위가 확대 발전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도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UD매뉴얼 개발, BF인증 시범사업 추진, UD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상당수에 성과를 일구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대전시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상승, 외국여행객의 증가,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대내외적인 사회변화와 국제도시로서 성장을 위한 정책강화에 따라 도시의 환경이 사용자의 다양성을 수용」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음
- 이에 따라 대전시는 기존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보다 명확히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②외국의 선진도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정확히 분석하여 추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며, ③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도시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계획목표는 2010년 ~ 2014년 5년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자료는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함

2. 공간적 범위

- 대전시의 행정구역을 주요대상으로 하되, 타시도 및 국외 사례 검토를 포함하고 기 추진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지를 주요 평가대상지로 함

3.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추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정립, 외국 선진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검토, 대전시의 기 추진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과분석, 대전시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로드맵 제시로 나눌 수 있으며, 전체적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정립

-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국내외 선진도시의 사례분석·대전시 현황분석 등을 통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대전시의 위상에 부합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정립

■ 외국 선진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분석

- 우리보다 앞서 도시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조직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며, 특히 유니버설디자인의 사업시행을 위한 제도과 조례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 기 추진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과분석

- 기 추진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대상으로 시민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새로운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에 맞추어 사업을 재분석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검토

■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추진을 위한 대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로드맵 제시

- 대전시가 추구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비전과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와 지원체계,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 로드맵 제시

제3절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1. 관련 법·제도 검토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 및 제도 등을 검토
- 새로이 정립되는 대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에 맞추어 기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업그레이드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법률체계 내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
- 국토부·보건복지부·LH공사 등이 제시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
-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일본의 법·제도는 주요 현 및 시의 조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2. 국내·외 문헌조사

-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연구 방향을 도출하며, 대전지역의 문제점과약과 시사점을 제시
- 중앙정부 및 타시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한 문헌연구(각종 보고서 및 지침),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보고서 및 논문 및 전문서적 등 이론고찰
- 선진국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조례 등을 검토, 논문 등 이론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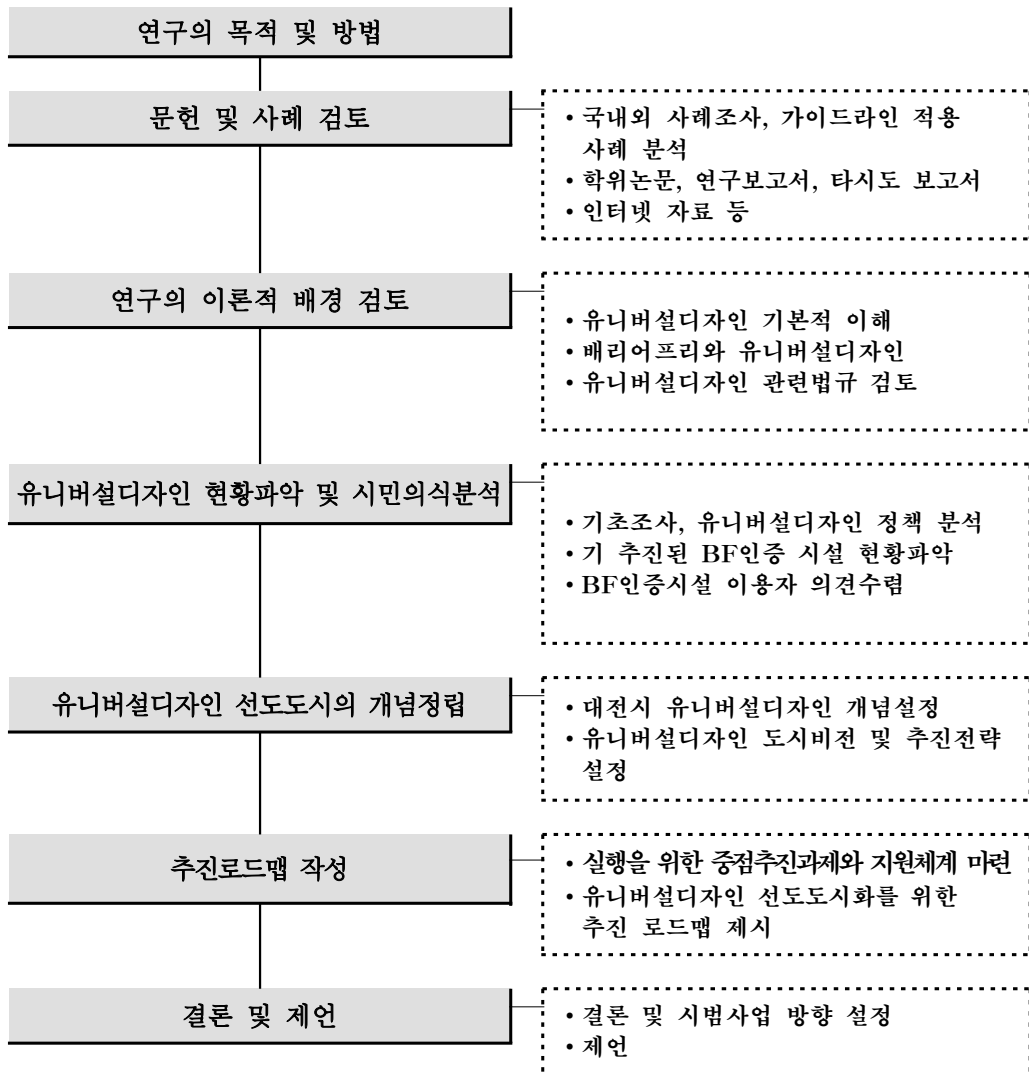
3. 기 추진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현장조사

- 지금까지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따라 추진된 BF인증 신청시설 15곳 현장조사를 통해 대전시가 제시한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향후 관리방안 등을 모색함

4. 시설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 선행BF인증 신청시설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BF시설 인식 및 대전시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의 우선순위 등을 분석하여 유니버설디자인정책 및 사업에 반영
- 일반시민 및 장애인들에게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

본 연구의 내용은 선행연구의 검토,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유니버설디자인의 현황 및 의식분석,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의 개념정립,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로 크게 5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구전체의 진행흐름은 다음의 [그림1-1] 과 같음



[그림 1-1] 연구의 진행흐름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새로운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위상정립 제고
- 기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업그레이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개선 방향설정 가능
- LH공사가 제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은 기존 법체계 및 제도와 연동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칭)유니버설디자인조례 개정안 제시를 통해 제도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가능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시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 기 추진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시민인식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수립 시 반영할 수 있는 토대마련
- 관련 법규·제도 등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실행계획 수립시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앙부처의 시범사업추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집행을 유도
- 대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계획별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주요사업 시행 시 활용
- 선행 계획의 범위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 기대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계획의 차별성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선행연구와 본 계획의 차별성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동향

-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인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와 장애의 유무 및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자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은 개념의 위계 및 발생경위, 적용분야 등에서 다소 상이한 형태로 정립되어있음<표 2-1>
- 국내·외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용어를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교통 및 각종 시설에 있어서 휠체어 사용자로 대표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정비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로 정리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정립에 있어서는 북미지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아시아지역과 우리나라는 이용 대상자의 구분과 내용의 전개가 다소 차이가 있음. 또한, 특정 부류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의미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제로 도입 및 적용하기 위한 고찰이 부족한 실정임
-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실행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의 검토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대전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 추진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정리·검토하여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명백히 하고자 함

<표 2-1> 국내 선행연구의 주요사례

연구명 구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장애물 없는 도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 및 심사기준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적용에 관한 연구
연구 기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 공사	한국토지공사	대전광역시	대전발전연구원
연구 일시	2007년 2월	2007년 12월	2009년 2월	2008년 6월	2008년 12월
대상 구분	교통약자 (장애인)	교통약자 (장애인)	교통약자 (장애인)	장애인 (휠체어이용자)	고령자, 장애인
적용 방식	배리어 프리	배리어 프리	배리어 프리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 인
내용 특성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시설, 보행우선구역별 시설정비방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평가 기준, 지표 및 인증제도 운영방안	도시 / 구역에 대한 인증지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제시	건축물, 도로,공원, 공공교통시설별 정비방식 제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 검토
연구 수준	시설의 정비의 수준에서 정리됨	법적인 기준 설정 그침	법적인 기준 설정에 그침	시설의 정비의 수준에서 정리됨	개략적인 사례조사

차 별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개념설정과 비전, 추진전략, 추진과제 제시 ○ 대전시 환경변화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수립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사용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실적 과제검토 및 방향설정
-------------	--

2. 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연구의 목표

-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고, 대전에 거주하는 자나 방문자가 쾌적하게 느끼고, 안심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시설물과 도시기반 시설 등을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지침 마련

-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편리성과 용이성을 제공하는 각종 제도와 서비스 등의 측면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도로, 건물, 교통 시설 등 도시의 가로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대전시 UDP(유니버설디자인계획)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침서 제공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의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고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소개, 대전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분석한 후 대전시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해 논의
- 문헌조사를 활용한 자료 분석 및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연구방향을 도출하고, 대전지역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

- 연구의 내용

- 국내·외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① 일본의 국토교통성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 ② 이와테현, 오카야마현, 쿠마모토현, 시즈오카현, 토쿠시마현, 도쿄도, 나가사키현, 후쿠이현, 효고현, 미에현, 미야자키 현 등 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디자인정책
 - ③ 국내 사례 및 시사점
-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
 - ① 대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계획
 - ②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 ③ 대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지침 설정 ④ 대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지역조성 추진방안
- 사례지역 가로환경의 문제점 및 시사점

- 정비기준 요소 <표 2-2>

- 일본의 동경도 및 나고야시의 복지도시환경 정비지침에 포함된 가로환경의 정비기준을 활용

- 접근성, 주차장, 현관주의, 경사로, 출입구, 엘리베이터, 보차분리, 횡단보도, 보도폭 및 구배, 입체횡단시설, 보도포장, 음수전, 벤치, 공중전화기, 야간조명, 안내시설 등

- 사례지역 가로환경의 조사의 대상 항목

- 하드웨어적 측면 : 보도, 주차장, 현관 및 출입구 주위, 경사로, 엘리베이터, 보차분리, 횡단보도, 공중 화장실, 음수전, 공중전화기, 버스정류장

- 소프트웨어적 측면 : 시민의식의 고취, 모든 주체의 참여 방안

〈표 2-2〉 가로환경의 요소별 정비지침 체크리스트

요 소	정 비 지 침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서 건물입구를 연결하는 축이 되는 보행자 동선에 안전하게 통행 가능한 보행자 통로를 설치 - 통로는 자동차도와 분리를 원칙으로 함 - 도로는 극단적인 단차가 없도록 계단 혹은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설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설치 - 주차공간의 위치는 외부출입구에 휠체어로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함
현관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관문은 휠체어 사용자가 지장없이 출입가능하도록 개구폭원확보 - 현관문 전후에 있어서 단차를 주지 않음 - 비상시를 대비해 수동식 외개구문을 병설 - 현관문의 전후에는 휠체어의 회전에 필요한 수평공간 확보 - 현관은 시력장애인도 알기 쉽도록 위치, 형상, 배색, 조명을 배려
경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 동선상에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 (단차해소)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지장없이 출입이 가능토록 폭원 확보 및 단차해소
엘리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는 상하이동의 유효한 설비이므로 가능한한 설치 - 엘리베이터 중 1대는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배려
보차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와 차도는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 보도와 차도의 분리방법은 도로의 제반조건을 고려
횡단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장소 설정 - 시각장애인의 이용상황을 배려하여 음향식 신호기를 병설
보도폭 / 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나 장애인이 안심하고 통행 가능하도록 보도의 유효폭원 확보 -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보도의 구배 완만히 함
입체 횡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교나 지하횡단보도 등의 입체횡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구조로 함
보도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평탄성, 미끌어지지 어렵고 물빠짐이 좋은 재료를 선택하여 시공
음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가능한 구조이며,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배려
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보행 중에 휴식이나 교류가 가능한 시설로서 필요에 따라 도로상에 벤치 등을 설치
공중 전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고령자 및 외국인의 이용이 곤란하지 않도록 전화기종, 전화대 등에 배려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밝기유지
안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고 큰 문자 혹은 기호를 사용

3.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대전광역시)

- 건축물, 도로, 공원,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시설별 적용방식에 대한 지침으로 제시 <표 2-3>
-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설정하여 정리

<표 2-3>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가능 시설의 분류

분류	세부항목	지침내용
건축물	1. 보행접근로	보도의 접근성 및 유효 폭, 재질, 마감, 기울기, 경계, 보행장애물 등
	2. 주차장	설치장소 및 주차공간, 유도표시
	3. 주출입구, 일반출입문	유효 폭 및 활동공간, 문의 구조, 손잡이 및 점자표지, 기타설비 등
	4. 복도 및 통로	유효 폭 및 구조, 바닥, 손잡이, 보행장애물, 안전성 확보 등
	5. 경사로	유효폭, 기울기, 손잡이, 재질 및 마감,
	6. 계단	계단의 형태, 유효폭, 디딤판 및 쉼면,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7. 승강기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유효폭, 이용자 조작설비, 기타시설
	8. 에스컬레이터	유효폭 및 속도, 디딤판, 손잡이
	9. 휠체어 리프트	일반사향, 경사형·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10.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	일반사향,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11. 욕실, 샤워실, 탈의실	설치장소 및 구조, 바닥 및 손잡이, 기타설비
	12. 점자블록	규격 및 색상, 설치방법
	13. 유도 및 안내시설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14. 객실 또는 침실	설치장소 및 구조
	15. 관람석 또는 열람석	설치장소 및 구조
	16. 접수대 또는 작업대	활동공간 및 구조
	17.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설치장소 및 구조
	18. 공중전화	설치장소 및 구조, 조작설비 및 기타설비
	19.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실	설치장소 및 구조
	20. 안내표시	설치위치 및 표시장치

분류	세부항목	지침내용
도로	1. 보도	보도의 유효폭, 포장, 기울기,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차량진출입부, 턱 낮추기
	2. 횡단보도	턱 낮추기와 부분경사로, 안전지대, 교통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보도와 차도의 접속경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의 접속경계, 고원식 횡단시설, 보행섬식 횡단보도,
	3. 지하도 및 육교	일반사항
	4.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장소 및 방법
	5. 음향신호기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6. 속도저감시설	고원식 교차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로 폭 좁힘,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7.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일반사항
	8.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휴게공간	일반사항, 휴게시설
공원	1. 출입구 및 접근로	일반사항
	2. 주차장	설치위치 및 유효폭, 주차표시, 주차장 안내표시
	3. 매표기·판매기·음료대	설치위치 및 유효 폭, 주차표시
	4. 보행로	일반사항
	5. 계단	유효 폭 및 손잡이, 구조, 일반사항
	6. 경사로	유효 폭 및 손잡이, 구조
	7. 화장실	일반사항, 유효 폭 및 손잡이, 구조
	8. 유도·안내표시	설치방법
	9. 손잡이·난간	일반사항
	10.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방법
	11. 벤치	구조
	12. 탁자	구조
	13. 공중전화	구조
	14. 음수대	구조
공공 교통 시설	1. 개찰구	일반사항
	2. 통로	일반사항
	3. 경사로	일반사항
	4. 계단	일반사항
	5. 승강기	일반사항
	6. 화장실	일반사항
	7. 손잡이	일반사항
	8.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일반사항, 설치방법
	9. 유도 및 안내시설	일반사항
	10. 매표기	일반사항
	11. 에스컬레이터	일반사항
	12. 공중전화	일반사항
	13. 음수대	일반사항
	14. 교통수단	일반사항,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
	15. 승강장	일반사항, 여객자동차터미널

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국토해양부)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시설, 보행우선구역의 정비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시설별 적용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시 <표 2-4>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실제 각 시설물별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매뉴얼을 제시
- 주 이용 대상자인 교통약자를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으로 설정
- 교통수단 및 각종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접목함과 동시에 보도, 보행자 공간에 대해서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입하여 소개

<표 2-4>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시설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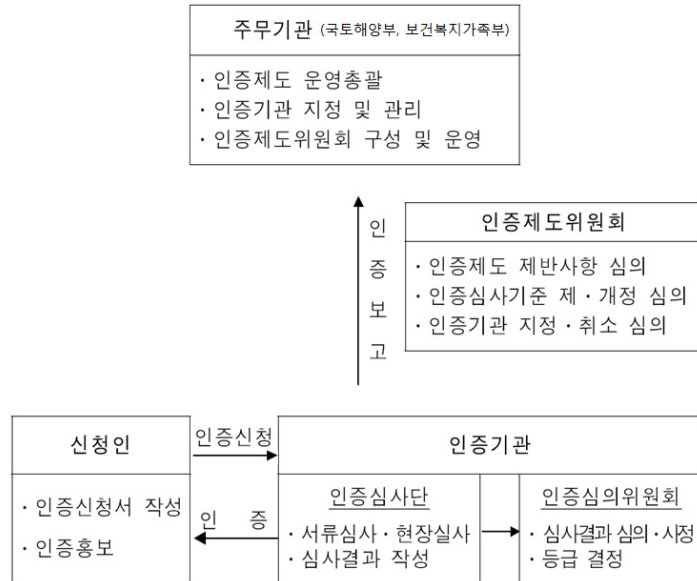
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교통수단	1. 버스	1-1. 자동 안내 방송시설 1-2. 전자문자 안내판 1-3. 행선지 표시 1-4. 휠체어 승강설비 1-5. 교통약자용 좌석 1-6. 수직 손잡이 1-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2. 철도차량	2-1. 자동안내 방송시설 2-2. 전자문자 안내판 2-3. 행선지 표시 2-4. 휠체어 승강설비 2-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2-6. 장애인 전용 화장실 2-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2-8. 출입구 통로
	3. 도시철도 차량 및 광역전철	3-1. 자동안내 방송시설 3-2. 전자문자 안내판 3-3. 행선지 표시 3-4. 교통약자용 좌석 3-5. 수직 손잡이 3-6.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3-7. 출입구 통로

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교통수단	4. 항공기	4-1. 안내시설 4-2. 내부시설 4-3. 기타시설
	5. 선박	5-1. 자동안내 방송시설 5-2. 전자문자 안내판 5-3. 행선지 표시 5-4. 휠체어 승강설비 5-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5-6. 장애인 전용 화장실 5-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5-8. 출입구 통로
여객시설	1. 보행접근로	1-1. 보행 접근로
	2. 주출입구	2-1. 유효폭 및 활동공간 2-2. 문의형태 2-3. 손잡이 및 점자 표지판 2-4. 기타시설
	3.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4. 통로	4-1. 유효폭 4-2. 바닥 4-3. 손잡이 4-4. 보행장애물 4-5. 안전성 확보
	5. 경사로	5-1. 유효폭 및 활동공간 5-2. 기울기 5-3. 손잡이 5-4. 채질 및 마감
	6. 승강기	6-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6-2. 크기 6-3. 이용조작설비 6-4. 기타설비
	7. 에스컬레이터	7-1. 설치장소 7-2. 유효폭 및 속도 7-3. 손잡이
	8. 계단	8-1. 계단의 형태 8-2. 유효폭 8-3. 디딤판 및 켈면 8-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8-5. 채질 및 마감 8-6. 기타설비
	9. 장애인 전용 화장실	9-1. 일반사항 9-2. 대변기 9-3. 소변기 9-4. 세면대
	10. 점자블록	
	11. 유도 및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시설	
	12. 매표소·판매기·음료대	
	13. 개찰구	
	14.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승강장	
	15.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16. 보안검사장 / 여객탑승교	
	17. 대기시설	

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도시시설	1.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1-1. 보도와 유효폭 1-2. 포장 1-3. 기울기 1-4.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1-5. 차량 진출입부 1-6. 턱 낮추기 1-7. 접자블록 1-8.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4.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5. 기타시설	
보행우선구역	1. 속도저감시설	1-1. 고원식 교차로 1-2.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1-3. 차도폭 좁힘 1-4. 요철포장 1-5. 과속방지턱
	2. 횡단시설	2-1. 고원식 횡단보도 2-2. 보행섬식 횡단보도
	3. 기타시설	3-1.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3-2.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신호기 3-3. 보도용 방호울타리 3-4.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지표 및 심사기준 (LH공사)

- 도시/구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분류된 각 시설별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인증지표 및 심사 기준을 설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건축설계 매뉴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독일 / 일본의 편의증진 관련법규 등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2-1], [그림 2-2]



[그림 2-1] BF 인증업무체계

구 분	실시실제 신청 시	준공단계	유지관리 단계
인 제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인증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인증심사</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인증수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인증연장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인증심사</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1차인증연장</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2차인증연장 신청</div> :
예 비 인 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예비인증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예비인증심사</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예비인증수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본 인증 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인증심사</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인증수여</div>	: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광고 등에 활용 ○ 사용승인까지 유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서교부, 인증현판 부착 (5년간 유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5년), 2차(5년) 연장가능

[그림 2-2] BF 인증신청절차

제2절 선행연구와 본 계획의 차별성

1. 시설물 위주의 실행계획에서 탈피

-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각 시설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설물정비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적용을 위해 시설물 위주의 계획에서 탈피하여 도시 및 지역, 정책적인 측면 등 포괄적인 계획수립 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확립

-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적 차이 및 발상의 근거 등을 인지하고, 각종 자료조사를 통하여 명확한 의미와 방향성이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확립
- 교통측면만 강조한 안전성과 편의성 중심의 개념이 아닌, 도시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종합계획으로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식 고찰

3. 이용 대상자의 포괄적 설정

- 교통약자 혹은 장애인 등 특정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협의의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지역을 방문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활용도를 고려한 수립계획
-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임산부, 어린이, 시각, 청각 장애인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자,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가능한 모든 이용자에게 평등한 이용의 기회와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공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유도함
- 국제도시의 지향과 다문화가정의 확산 등으로 인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국제도시다운 공공디자인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

4. 현황조사 및 의식조사를 통한 사업효과 검토

-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시설물 및 공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 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있는 예비적용지역에 대한 자료 확보
- 의식조사를 통하여,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 및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기타 각종 수요를 파악

5. 사업실천을 제고시키기 위한 실현수단 확보방안 검토

- 대전시의 각 지역 및 시설물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정책적, 사업적 수단의 로드맵 제시
- BF인증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건축물 위주의 사업에서 도로, 공원 등으로 시설정비 대상 및 인증범위 확대의 검토
- 대전시 도시디자인조례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내용 및 교육·컨설팅 및 홍보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발주를 위한 기본적 검토 및 실천사항을 파악하고, 유니버설디자인선도 도시화를 위한 장기전략 수립에 이바지
-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선정 및 조성으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홍보자료로 활용

제 3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제1절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적 이해

제2절 배리어프리화 유니버설디자인

제3절 유니버설디자인 국내 · 외 동향

제4절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규
.....

제3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적 이해

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정리

□ 특수해와 일반해에서 융합해로

-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 정상인만을 위한 시설 이원론적인 구분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시설로 즉,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음
- 예를 들면 특수한 상황만을 고려한 장애인용 화장실에서 모두의 환경을 배려한 다목적 화장실로 변경하여 따뜻한 사회를 조성
- 양자택일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도입 (공공시설물 디자인에서의 공공성 제고)

□ 유니버설디자인 정의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전부의, 보편적인, 공통의 라는 의미의 ‘유니버설’ 과 계획, 설계, 구상을 의미하는 ‘디자인’ 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용어
- 누구에게나 어려움없이 적용될 수 있는 뜻하며, 경우에 따라 inclusive design, accessible design, just accessibility 등으로 일컬어짐
-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의 건축가인 로널드메이스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음
- 별도로 개조하거나 특별히 설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자인을 의미하며, 그 대상은 장애인 및 고령자등의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들로 규정하여, 정상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라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지향

- 유니버설디자인은 인간중심의 디자인, 평생디자인을 말하며, 이 디자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내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도시디자인이라 할 수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은 환경 심리 생태학에서 다양한 사용자들 중에서 장애인들을 하나의 동등한 사용자 그룹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특별히 장애인들만을 배려한 디자인 무장애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유니버설디자인의 결과로 형성되는 환경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

2.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 및 원리

□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 로널드 메이스

①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라도 차별감이나 불안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가? ◇ 모든 사용자들에게 같은 사용 방법을 제공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할 경우 똑갈게, 그렇지 않을 경우 동등하게. ◇ 가능한 한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지 못할 때는 그에 상응하게 어떤 사용자든지 분리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피하라. ◇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한 규정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 디자인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어필되도록 하라.

② 사용상의 융통성 (flexibility in use)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두르거나, 다양한 생활환경 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 ◇ 사용방법의 선택권을 제공한다. ◇ 왼손-오른손잡이의 접근과 사용을 위한 방법을 도모하라. ◇ 사용자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용이하게 하라. ◇ 사용자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라.

③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tuitive)

복잡하지 않아 사용자의 기대에 일치하게

- ◇ 직감적으로 사용방법을 간단히 알 수 있고, 사용 시 피드백이 있는가?
- ◇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라.
- ◇ 사용자의 기대와 직관력에 일치되게하라.
- ◇ 광범위한 문자와 언어 기술에 부합되도록하라.
- ◇ 중요도에 일치하도록 정보를 정리하라.
- ◇ 작업이 완료된 후나 그 진행중이라도 실질적인 응답과 반응을 제공하라.

④ 정보 이용의 용이 (perceptive information)

필수 정보를 알기 쉽게

- ◇ 정보구조가 간단하고, 복수의 전달수단을 통해 정보입수가 가능한가?
- ◇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 언어, 촉감을 사용.
- ◇ 필수적인 정보와 주변 정보와의 적절한 비교를 제공하라.
- ◇ 필수적인 정보는 최대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 ◇ 묘사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그 요소를 구별하라.
 - 즉, 지시하거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쉽게하라.
- ◇ 감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구나 기술들에 호환성 제공

⑤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실수를 하여도 위험하지 않게

- ◇ 사고를 방지하고, 잘못된 명령에도 원래 상태로 쉽게 복귀가 가능한가?
- ◇ 위험과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요소를 배열하라.
 - 대부분 쉽게 알아챌 수 있고 이미 사용된적 있는 요소를 사용하며, 위험한 요소는 제거하거나 막아 놓을 것.
- ◇ 위험하거나 실수를 유발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라.
- ◇ 안전성이 실패할 것을 대비하라.
- ◇ 주의를 요하는 일에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라.

⑥ 적은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적은 노력으로 가능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의미한 반복동작이나,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런 자세로 사용이 가능한가?◇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하라.◇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힘을 사용하라.◇ 되풀이되는 동작을 최소화하라.◇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을 최소화하라.

⑦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접근과 사용이 편한 크기와 공간을 확보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이나 수납이 용이하고, 다양한 신체조건의 사용자와 도우미가 함께 사용이 가능한가?◇ 중요한 요소들은 앉아있는 사람이나 서있는 사람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이도록 하라.◇ 모든 물건이 앉아있는 사람이나 서있는 사람 모두에게 편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하라.◇ 손이나 손잡이 크기의 변동을 고려하라.◇ 보조장치나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라.

□ 유니버설디자인의 특성으로서 4가지의 원리

- 첫째, 기능적 지원성 (Supportive Design)
- 둘째, 수용성 (Adaptable Design)
- 셋째, 접근 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 네째, 안전한 디자인 (Safety-Oriented Design)

□ 일본 도쿄도의 건축물등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한 ‘이용의 편리를 측정하는 수법에 관한 5가지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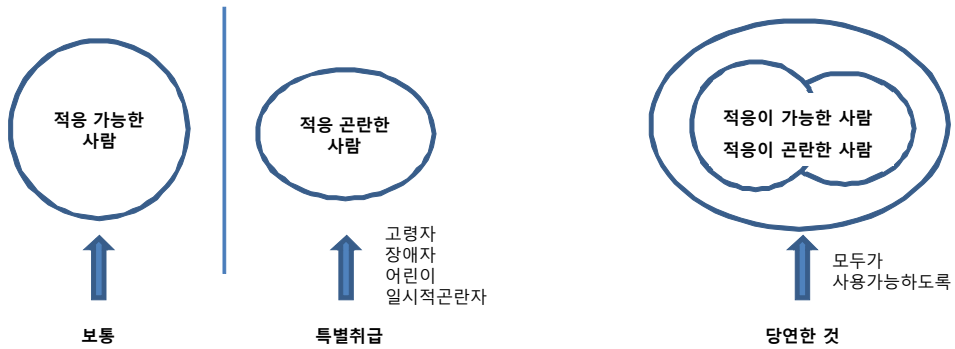
- 첫째, 공평 (누구라도 똑같이)
- 둘째, 간단 (용이하게)
- 셋째, 안전 (위험없이)
- 넷째, 기능 (쓰기 편하도록)
- 다섯째, 쾌적 (기분 좋게)

제2절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

1.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차이점

- 고령자나 장애인이 사회와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사회 속에서 그것을 막아버리는 현실이 있다는 인식 아래에서, 그 장애가 되는 것을 배리어라 부르고, 배리어를 없애는 것(배리어프리)으로 사회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담겨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은 배리어프리처럼 고령자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자라는 것에서 시작됨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이라고 일컬어짐
- 유니버설디자인의 사고는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인간이 가진 요구에 대응하는 것’ 즉, 배리어프리에서는 장애가 없는 사람은 주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유니버설디자인에서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이용 대상의 범주에 편입되어 있음
- 배리어프리는 장애가 존재하여 그것을 없애기 위한 수선적인 발상에서 시작되었으며, 적응 가능한(사용 가능한) 사람과 적응 불가능한(사용 불가능한) 사람으로 이 분류를 행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은 신체기능상의 어려움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고, 그 전체를 위한 디자인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3-1]

- 배리어프리는 이미 존재하는 장애(배리어)를 없애려는 노력이 담겨있는 행위이며, 유니버설디자인은 처음부터 모든 장애유무 및 남녀노소, 국적 및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를 배려하여 적용가능토록 하는 행위를 의미함



[그림 3-1]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의 발상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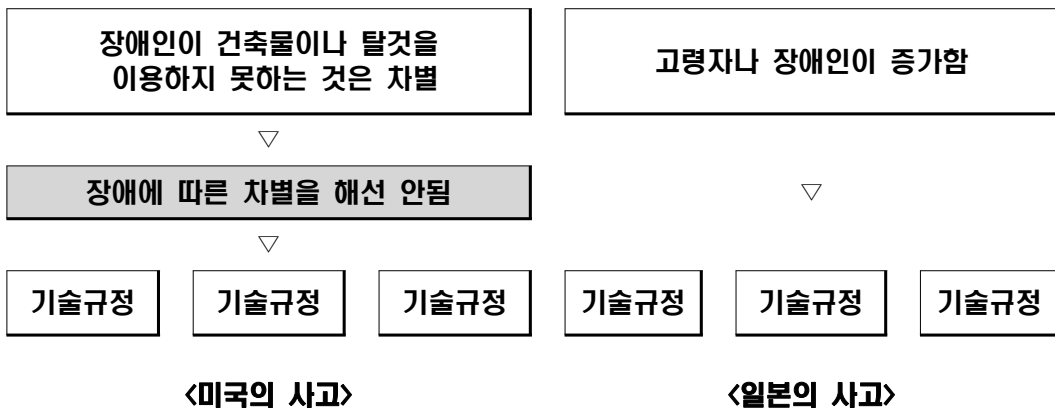


제3절 유니버설디자인 국내·외 동향

1. 미국 유니버설디자인의 역사와 전개

- 미국 유니버설디자인의 전개과정과 발전은 인구, 법률, 경제, 및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에서 많은 병사가 깊은 상처를 입고 귀국했으며, 그들에게 재활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을 폈으나, 건축을 비롯한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를 극복할 수는 없었음
- 이러한 장애인들(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시초로 배리어 프리가 적용되고, 주목받기 시작함
- 1961년 전미국기준협회(ANSI)의 A117.1이라는 설계기준 발표하여, 엑세서블 앤드 유저블(Accessible and Usable: 접근이 가능한, 사용이 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1968년 건축장벽법(Architectural Barriers Act)이 개정되었으며, 이 법은 건축, 개수, 임차되는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요구한 최초의 연방법으로 알려짐
- 1973년 리허빌리테이션법 제504조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
- 1982년 ANSI A 1717.1에 덧붙여 ‘건축장벽법’의 요건이 만족되고, 또 건물시설이 그 물적 환경이나 교통,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부터 엑세서블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 MGRAD(엑세서블 설계최저지침요건)이 추가 됨
- 1984년 구체적인 설계기준인 UFAS(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 : 엑세서빌리티 통일 연방기준)이 작성됨
- 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의 인권회복을 위한 법규제정, 주택이나 공공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물의 제거(Barrier Free), 이들의 재활을 돕는 재활공학과 기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
- 1990년 민간에 대한 ‘인종, 피부, 색, 종교, 출신국, 성별을 기준으로 한 차별’과 더불어 ‘장애를 기초로 한 차별’에 대한 금지규정이 정립되어, 확산됨

- ADA는 건축 등에 관한 기술규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기술법이 아닌 차별을 금지한 인권법이므로, 일본의 같은 권리의 배경이 없는 기술법과 차별됨
- 1974년부터 80년에 걸쳐 ANSI A117.1의 개정작업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이 확립 되었으며, 1985년에 용어가 확실히 명기됨
- 현 미국정부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교육청내의 NIDRR (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 국립장애 리허빌리테이션 연구소)를 통해 조사연구를 행하고 있음



[그림 3-2] 미국과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사고의 차이

2. 일본 유니버설디자인의 역사와 전개

-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마을 정비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
- 후생성의 장애인 복지(배리어프리)와 관련한 도시 및 마을 정비
 - ‘장애인 복지 모델도시’ (1973~75년)로서 53개 도시를 지정
 - ‘장애인 복지도시’ (1979~85년)로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156개 시·구를 지정

- ‘장애인이 살기 좋은 거리만들기 사업’ (1986-89년)으로서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76개 시·구를 지정

장애인의 생활환경(공공시설, 도로·교통 안전시설, 주택)의 개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실시, 심신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추진 및 시민 계발의 네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

- ‘살기좋은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1990부터 실시)으로 인구 3만 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지정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사업의 하나로서, 고령자도 그 대상에 포함됨

-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친근한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 (1994년)

2~3개월의 단기사업으로, 연간 예산도 적어 실제적인 설계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배리어프리 마을 만들기 활동사업’ (2010년부터 실시)

3. 고령사회대책으로서의 일본 유니버설디자인 및 배리어프리 정책

- 보도자료의 장래통계에 의하면 일본인구는 2007년경부터 감소하는 한편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015년에는 3,277만명으로 증가하면서 고령화 비율은 26.0%가 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시책으로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 고령사회대책회의, 고령 사회대책관계예산 등이 있음
- 고령자를 배려한 마을조성의 종합적 추진 사항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생활환경분야 정책은 개략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음<표 3-1>, <표 3-2>

<표 3-1> 고령자를 배려한 마을조성의 종합적 추진사항

사업명	사업의 개요
건강하고 활력있는 마을조성 기본계획 책정·보급개발추진 사업	고령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생활 가능하도록 지방 공공단체가 행하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형성에 관한 기본계획 책정을 추진
사람에게 친근한 마을조성 사업	고령자를 배려한 마을조성의 추진을 도모하며, 고령자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에 있어서 고령자 등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고령자 등의 이용을 배려한 건축물의 정비 시행
배리어프리 마을조성 사업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당사자 스스로가 직접 점검·조사를 행하여, 이를 반영한 배리어프리 마을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책정함과 동시에 필요한 기존 공공시설의 환경개선을 실시 배리어프리화된 시설 등을 제공, 배리어프리 마을조성 정비를 추구
공생의 마을조성 추진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 아동등의 모든 사람이 자립하여 활기차게 생활하고 사람들의 교류가 심화되는 공생형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 지원

<표 3-2> UD를 고려한 마을조성 종합적 추진

사업명	사업의 개요
교통 배리어프리법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기본구상의 작성과 공공교통사업자 등에 의한 배리어 프리화의 추진을 추진
공공교통기관의 배리어프리화에 대한 지원	사용자에게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공공교통기관과 보행공간의 배리어프리화 진전으로서 공공교통기관 여객 시설의 이동 원만화 정비 가이드라인, 도로의 이동 원만화 정비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가이드라인의 보급
교통 배리어프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시책	고령자의 원만한 이동을 위해 역, 공항 등의 공공교통 터미널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 고령자의 이용을 배려한 시설의 정비등
유니버설디자인의 생활용품등의 연구개발	고령화사회가 진전되는 가운데 UD를 상징하는 사용자인 인간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한 제품의 개발, 설계를 촉진하기 위해 인체사이즈를 시작으로하는 인간 특성에 관한 기반을 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4. 일본 주요 자치체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례

〈표 3-3〉 일본 주요 지자체별 주요 UD관련 정책 및 사업 일람

자치체	UD관련 정책 및 사업명
아키타현	함께 사는 배리어프리 사회조성
이바라기현	이바라기 유니버설디자인 연구회 유니버설서비스 향상 연수
이와테현	유니버설디자인 이와테 선언, 유니버설디자인 핸드북 남녀공동참여사회추진,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오이타현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사업
오사카부	정보의 유니버설디자인
오카야마현	오카야마 UD선언, UD체험대 사업, UD세미나 오카야마현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지침
오키나와현	IT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카고시마현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
카나가와현	한마음 지원센터
쿠마모토현	쿠마모토 유니버설디자인 진흥지침, UD연구회, UD국제심포지엄, UD좌담회, 4개국어 안내표시 사례집
군마현	군마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연구회
사이타마현	누구나 참가하기 쉬운 UD 회의·강연회 실시기이드(안)
사가현	사가현 공공시설 UD화 추진방침
시즈오카현	시즈오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의 실천,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콩쿠르, 시즈오카 유니버설디자인 강화 등
치바현	치바현 도시정비 기본방침
도쿄도	도쿄도복지 마을조성추진협의회 산업활동에 있어서 UD화 촉진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토야마현	토야마현민 복지 기본계획추진 프로젝트 복지마을 조성 추진과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촉진
토쿠시마현	토쿠시마 유니버설디자인기본지침 토쿠시마공공사업 유니버설디자인추진 플랜
토치기현	토치기 장애인 플랜21
돗토리현	돗토리현 인권시책 기본방침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유니버설디자인 추진기본지침
나가노현	마을조성사례 등의 개정에 관련된 현민 의견모집
나라현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조성 교실
니이가타현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보고서 유니버설디자인 강연회,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지침
미에현	배리어체험 세미나, 유니버설디자인 마을조성 시설-정비 매뉴얼 발행
후쿠이현	후쿠이현 복지마을조성 추진협의회
후쿠시마현	후쿠시마 유니버설디자인연구회, 후쿠시마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홋카이도현	홋카이도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검토 프로젝트 공영주택 등 안심거주 추진방침 경관제품 개발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효고현	효고 유니버설디자인사회조성 종합지침
미에현	미에현 배리어프리 마을조성 추진 조례, 미야현 유니버설디자인 마을조성상 등
미야자키현	사람에게 친근한 복지마을조성 추진, 미야자키현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
야마가타현	유니버설디자인사례집 발간
야마구치현	유니버설디자인 연구회, 야마구치현 유니버설디자인 행동지침

□ 이와테현의 사례

- ‘현민에게 친절한 마을조성추진협의회’는 현민 누구나 사회참가가 가능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은 물론 임산부와 어린아이,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과 건물 등을 간단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디자인하는 UD이념을 한층 확대, 연계하고자 2003년 ‘유니버설디자인 이와테 선언’을 실시
 - 자신이 사는 지역을 UD시점에서 바라보고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
 - 연령, 성별, 신체상황 등 다양한 개성을 이해하고 상호 필요한 도움
 - 누구나 걷기 편하도록 인도·차도에 간판이나 자전거를 두지않음
 - 사업자는 UD이념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시점에서 서비스 향상 및 제품개선
 - 행정은 주민과 함께 계획적으로 지역의 UD화를 진전
- 이와테현 ‘마을만들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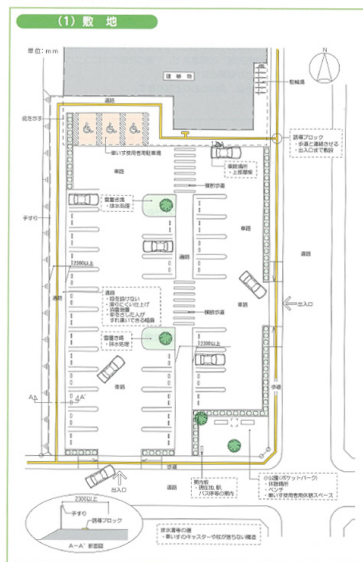
- 2004년 4월 이와테현 현도정비부 편찬
- 유니버설디자인의 사고법을 반영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침서로서, 마을만들기의 진행방식과 부지, 주차장, 현관 등 13항목의 건축물 부문과 도로, 시가지 부문으로 분류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자료편에서는 [인간친화적 마을만들기 추진지표]의 포인트 및 4가지 기본적 시점,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 안내판, 안내판용 지도기호, 시각장애인용 블록등의 부설 사례, 통행에 필요한 폭원, 일시피난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수록

まちづくり 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 ガイドライン



平成16年3月
岩手県県土整備部

2 建築物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



● 오카야마 유니버설디자인 ‘가까이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 ‘가까이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중 마을의 UD 항목에서 제시한 사례

- (가) 다목적 화장실(편리함, 공평함)
- (나) 초저상 노면전차 (편리함, 공평함)
 - 전차의 출입구와 홈이 같은 높이
 -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 일반인 모두에게 편안히 설계
- (다) 보도, 자동차도, 차도가 분리된 도로
 - 각각의 통행 스페이스가 분리
 - 접촉사고 등을 방지하여 안전성 확보
 - 단차가 적고, 보도에는 점자 블록이 설치
- (라) 이중의 손잡이 설치 계단
 - 높이가 다른 손잡이를 2단으로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身近な UD まちのUD



視点 **편리성, 공평성**

多目的トイレ

特徴 出入口や内装が広く、手すりやおむつ交換台などが整備されている。車いすの人や赤ちゃんづれの人など、さまざまな人が利用できる。



視点 **편리성, 공평성**

超低床型路面電車

特徴 電車の出入口とホームが同じ高さなので、ベビーカーの人や身体の不自由な人だけでなく、みんなが使いやすい。



視点 **안전·安心**

歩道、自転車道、車道が分かれた道路

特徴 それぞれの通行スペースを分けることによって、接触事故などを防ぎ、安全に通行できる。段差も少なく、歩道には点字ブロックもある。



視点 **柔軟성**

二重手すり階段、エスカレーター、エレベーターがある駅

特徴 どちらでも使いやすい方を選んで使うことができる。

□ 야마가타현의 사례

● 2003년에 제시된 ‘유니버설디자인 사례집’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의 필요성, 원칙, 기본적 고찰방식 등 제시
- 각 분야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정리
 - (가) 주택분야 : 단차가 없는 현관, 높이변경이 가능한 싱크대 등
 - (나) 도로(보도, 차도)
 - 넓고 단차가 없는 도로 및 벤치
 - 무설수의 소설보도(消雪歩道) : 동절기에도 안전하게 이용
 - (다) 교통기관 등
 - 저상형(바닥이 낮은) 원코인(100엔) 버스 등
 - 논스톱 버스에 대응한 버스정류장 : 연석과의 고저차를 없앴
 - 버스 로케이션 시스템
 - 창문이 달린 엘리베이터 등
 - (라) 공공시설, 건축물
 - 휠체어에 대응한 주차공간, 시인성이 높은 홀
 - 계단옆에 설치된 슬로프, 2중의 손잡이
 - 계단이 없는 입구, 단차가 없는 ATM 코너
 - (마) 상업공간(상점가, 쇼핑센터 등)
 - 벤치 등의 휴게공간
 - 자동도어
 - (바) 공원 등
 - 구배가 완만한 산책길
 - 3단의 손잡이가 설치된 산책길
 - (사) 정보·정보관련기기 등

3 道路 (歩道・車道)

【アクセシビリティ (アクセシビリティ)】

- 地理が不案内な人にとっても目的地への経路がわかりやすい。
- 歩道はできるだけ平坦で、アップダウン等は少なくする。
- 歩道は、車いすなどの使用に配慮した広さが確保されている。
- 複数の経路が提示され、天候や時間帯の状況により、利用者が選択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

【使いやすさ】

- 歩行者、自転車、自動車等の相互の交錯が可能ながざり避けられており、交わる場合でも衝突の危険性が少ない。
- 交通事故や災害時の緊急時の車輻通行も想定した安全面での対策がなされている。
- 歩行者も車利用者も利用して心理的・肉体的に疲れない。
- 歩道には適当な間隔で歩行者用ベンチなどが確保され、休憩することができる。

【持続可能性】

- 透水性舗装や植樹等の設置など環境に対する配慮がなされている。



広く凸凹のない歩道・ベンチ

広い歩道で、極力凸凹をなくしています。広い歩道は、車いすを利用してもしやすいが、容易であり、凸凹のない歩道は、つまづく原因や振動をなくし、安心して歩くことができます。路角交差部にベンチを設置し、ちょっと休憩できるスペースを確保しています。休憩できるスペースがあるると快適な空間になります。また、植樹等も設置されています。(アクセシビリティ) (使いやすさ) (持続可能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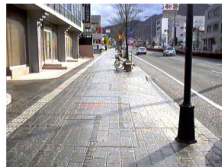
18



無敷水消雪歩道

無敷水の消雪歩道です。冬期間も安全、快適に歩くことができます。また、歩道は幅が広く、車いす利用の方もつうこうが容易にできます。目の不自由な方のための視覚障害者誘導用ブロックも設置されています。

(アクセシビリティ) (使いやすさ)



歩道にベンチが設置されています。ちょっとした休憩をとることができます。(アクセシビリティ) (使いやすさ)

19

□ 쿠마모토현의 사례

● 친화적인 마을만들기

- ‘하트빌딩법’ 이 2004년에 제정되어,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행정운영의 기본이념으로서 설정하고, 각종 시책을 강화
- 친화적인 마을만들기 조례를 책정
 - (가) 목적, 현의 책무, 현민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기본방침, 재정조치
 - (나) 시민 및 사업자의 의식 만들기, 사회환경의 정비, 생활환경의 정비
- 대상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보다는 배리어프리 중심의 조례로 구성되어있음

● 기존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 기존의 건축물을 유니버설디자인의 시점에서 검증·평가 할 때 방법이나 수순을 알기쉽게 표시
-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가능
- 공공시설이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건축물 전체, 이동공간 전반, 생활공간 전반, 정보장치 전반, 접근, 주차장, 현관, 복도,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슬로프, 레이통로 및 개찰구, 플랫폼, 손잡이, 화장실, 다목적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욕실, 숙박시설, 객실, 관람석, 객석, 카운터 및 음수대, 수유실, 가구, 조작버튼, 스위치 등으로 공간별 구성을 하고, 각각을 평가

● 기존 건축물의 시각정보 사인 개선 매뉴얼

- (가) 기존 시각정보 사인을 ‘알기쉬운 정도’, ‘읽기 쉬운 정도’, ‘아름다움’ 으로 구분하여 확인
- (나) 현재 상태의 확인, 안내방식의 재검토, 대응책등의 검토와 실시, 검증의 단계로 구성

• 시각정보 사인개선 매뉴얼

第4章 サインの機能種別と配置

2 誘導サイン



九州新幹線新八代駅



西合志町保健福祉センター

3 案内サイン



熊本県庁



熊本県庁

4 規制サイン



熊本県庁



グランメッセ熊本

□ 도쿄도의 사례

● 복지의 마을만들기 조례

- ‘도쿄도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
- ‘복지의 마을 만들기의 목표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어 자유롭게 행동하고, 사회참가를 할 수 있는 친화적인 마을의 도쿄를 실현」으로 목표설정
- 불특정 한편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일반 도시 시설)에 대해, 정비 기준에의 적합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특정 시설)에 신고를 의무화
- 급속한 소자·고령사회의 진전, 육아지원 환경의 정비의 필요성의 고조 등, 복지를 둘러싸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공동 주택을 정비 대상시설로 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강화하여 소규모 시설에도 확대하고, 육아 지원 환경을 정비 항목에 추가하는 등, 조례의 개정

● 배리어프리화를 향한 건축의 전개

-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후, 복지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배리어프리화 긴급 정비사업’ 추진
- ‘복지의 마을 만들기 지역 지원 사업’은 구, 시읍면을 주체로 하는 복지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 자치체의 구조 만들기나 공공시설의 배리어프리정비를 지원
- 공공 교통의 이동 원활화를 촉진하는 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철도역 엘리베이터등 정비 사업’이나 ‘누구라도 승하차 하기 쉬운 버스 정비 사업’등을 실시

● 유니버설디자인 이념의 도입

- 2005년 8월에 제4기 「도쿄도 복지의 마을 만들기 추진 협의회」에서 ‘향후, 연령이나 장애의 유무, 장애의 종별에 관계없이, 고령자나 장애인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쉬운 도시 환경의 창조나 물품의 제조가 요구되고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의 생각을 기본으로, 복지의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을 받음. (최종보고 「21세기의 복지의 마을 만들기 비전」)
- 이러한 문제 제기를 근거로 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생각을 기본으로한 복지의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대해 제5기 추진 협의회를 통해 검토
- ‘만들기’나 ‘정보 공유의 구조 만들기’등의 유니버설디자인이 관계하는 분야전반에 있어서의 대적의 방향성등에 대해 검토

●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시책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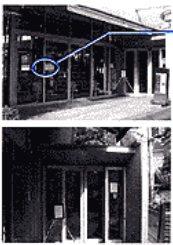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의 시점을 도입하여, 역이나 상가 등의 특정 구역에 있어 선구적인 복지의 마을만들기를 실시하는 구, 시읍, 면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복지의 마을만들기 추진모델사업」을 전개

● 도쿄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제5기 추진협의회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반으로 한 복지 마을만들기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심의를 실시하고, 도민이나 사업자등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시점으로부터 바람직한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비기준」으로서 가이드라인 활용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의 안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건축물등의 정비」와 「공공 교통에 있어서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 알기쉬운 시설정비를 위해, 독자적인 5개의 시점(공평, 간단, 안전, 기능, 쾌적)과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구체적 사례를 채택 및 해설하고, 출입구, 복도·계단, 화장실 등, 주요한 장소마다 정비시 유의사항을 제시

出入口 - 具体事例とそ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度 -

レストラン



自動引き戸の出入口

＝総合評価＝
周辺の景観と溶け合い、調和するようにつくり、いい雰囲気を出している。だれでも利用できるトイレがあることや、補助犬同伴者でも気軽に利用できることを、シールを貼ってさりげなくアピールしており、小さな店でありながら、自然な形で障害者を受け入れているところに好感が持て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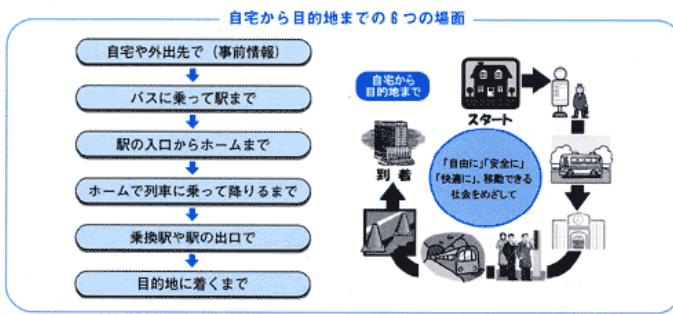
＝工夫されている点＝
○ 店の出入口と道路が直結しないよう、建築物を出たところに空間を設けている。
○ 自動引き戸になっている。
＝努力が求められる点＝
○ 外部出入口の床面は、材料や仕上げにも配慮して、でこぼこが生じないような工夫が必要である。

	0	1	2	3
公平				★
簡便				★
安全			★	
機能			★	
快適				★

3：優れた水準、2：よい水準
1：可、0：整備基準不適合

- 공공교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 복잡한 도내의 공공 교통망·도로망의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바람직한 정비의 방향성 제시



5. 일본 주요 자치체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례의 시사점

- 일본 주요 자치체에서 시행중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대전시에서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시행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함 <표 3-4>

<표 3-4> 일본의 각 자치체별 시사점

자치체명	제도, 정책적 시사점	시설, 공간적 시사점
이와테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를 통해 행정은 주민과 함께 계획적으로 지역의 UD화를 진전시킴 - 대전시에서도 일본과 같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UD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걷기 편하도록 인도·차도에 간판이나 자전거를 두지 않음 - 우리시에서는 인도·차도 등 통행 공간에 광고물 및 상업시설,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품방치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오카야마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민원실은 현청에 최초로 접근하는 공간으로, 1층 로비에 위치하며, 현의 정보습득과 만남의 장소로서 많은 방문객이 이용 - 민원실의 UD화를 통해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정책추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나 휠체어 사용자 등 선택 가능한 테이블과 의자, 현에서 생산되는 천연 목재재 사용, 움직이기 쉬운 공간의 UD화
야마가타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사례집 발행 - 추진의 필요성, 원칙, 기본적 고찰방식, 각 분야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 대전시도 직관적인 사례집(알기쉬운 사례집)을 제공하여, 각 구에서 실시 시 참고도록 하는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이 낮은 저상형의 원코인 버스 등의 도입 - 창문이 달린 엘리베이터 - 3단 손잡이가 설치된 산책길
쿠마모토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화적인 마을만들기 조례 - 시민에게 좀더 가깝게 느껴지는 용어를 활용하여 UD의 명칭을 대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사인, 규제사인 등의 시각정보 사인개선 매뉴얼 작성으로 사인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도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 복지의 측면에서 UD화에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 기준에의 적합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6.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례의 시사점

- 미국정책의 사례를 토대로 대전시에서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시행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함 <표 3-5>

<표 3-5> 미국의 법률과 가이드라인 사례

미국의 ADA의 사례	뉴욕시 “유니버설디자인 뉴욕” 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등에 관한 기술규정을 포함하지만, 기술법이 아닌 차별을 자체를 금지한 인권법 - 유니버설디자인 사고에 있어서 타국의 사례보다 한층 더 장애인들의 처우를 근본적인 입장에서부터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전시에서 향후 도입하게 될 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례로부터, 단지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치적 효과를 추구 것 뿐만 아니라, 차별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 및 법적, 행정적인 규제를 동시에 도모해 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시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홍보와 실제 정책의 실시 및 시공단계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뉴욕” 을 작성 - 모든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에 따르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 일반 신체 건강한 시민의 이용과 사회적 약자의 이용의 최소한의 구분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시민과 사회적 약자라는 두 가지 파트로 구분하여 각 시설 및 공간, 정책적 측면을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 - 대전시에서 향후 작성하게 될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의 편익을 존중함과 동시에, 특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사항을 기입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활용성을 고려한 작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제4절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규

〈표 3-6〉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규

제정년도	법률 명
1961.	생활보호법을 제정
1981. 06	심신장애인 복지법
1989.	장애인 복지법 개정
1990. 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4.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
1997. 04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대한 법률
2005. 07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2007. 0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 0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8. 0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1. 심신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 「심신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장애인복지법으로 그 이전에는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불구·폐질·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포함시켰고,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시작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미
- 1989년에는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
- 1995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
-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면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

- 2007년에 「장애인복지법」은 전면 개정하여 제1조에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 2007년 4월 5일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도시 또는 건축물의 시행단계에서 부터 일정 기준을 적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도록 평가·인증하는 제도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7년에 제정하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998년에 제정
- 이동제한 계층의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적인 교통수단 이용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포함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이동관련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로서 2005년에 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교통부분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종류와 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됨
- 각종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 도로 등에 있어서의 무장애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인증제) 추진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2007년 4월 5일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2008년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단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보다는 교통수단·시설에 접근 및 이동상 장애 없는(Barrier Free)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며, 법령상의 최저기준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관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사회적 약자의 근본적인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함
- 그 동안의 차량 위주의 교통수단·시설의 설치에서 사람 중심의(Human-orient) 교통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이동편의시설의 단순 설치보다는 전체적인 이동 동선확보가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

5.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Barrier-Free Transportation)

-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 제고
-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의 개선·확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에 의하여 지자체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
- 이 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

5.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 4월11일에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도로, 공원,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 매년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체계적인 편의증진정책 추진을 위해 시설주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은 5년마다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국가는 시설주관기관의 계획을 토대로 편의시설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시행
- 이에 따라 제1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을 1998년부터 수립하여 현재 3차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3차 종합계획은 지난 2008년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편의시설 설치율 77.5%를 2014년까지 88%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 ①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②제도 및 법령 개선, ③기술개발 및 연구, ④인식개선 및 정책 홍보 등 통합적 4가지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
- 첫째, 공공시설·주거·교육·작업·문화 등 생활전반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할 계획으로 수립
- 둘째, 건축 계획단계부터 편의시설에 관한 적정여부의 심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며, 편의시설 상세표준설계안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건축설계자가 법적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BF(Barrier Free)공모전을 개최하여 장애인 만을 위한 특별한 별도의 편의시설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디자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계획
- 셋째, 시설물 이용상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IT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계획
- 넷째, 편의증진관련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요

1. 인증제도 도입배경

- 건축물 설계 또는 도시개발 구상단계부터 사회적 약자와 일반시민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한 환경 조성 필요

2. 인증제도의 주요내용

□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편의시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국내외 각종 인증제도 사례

- 국내: 지능형 건축물 인증(국토부), 친환경 건축물인증(국토·환경부) 등
- 해외: 일본의 하트빌딩(Heart building)

□ 인증대상

- 신규도시(구역),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기존도시, 도로 등
 - 도시: 시·군·구 또는 신도시 단위(200만㎡ 이상)
 - 구역: 시·군·구의 행정동 또는 10만㎡ 이상 사업지역 등
 - 개별시설: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공원,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인증업무 관련기관

-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 (인증기관) 인증에 관한 실무업무 담당 : 한국장애인개발원, LH공사

□ 인증등급

- 인증 등급은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일반 등급(★)으로 구분

□ 인증 효과

- 인증받은 시설물의 설치자는 대상 시설물과 관련 있는 광고물 등에 인증로고 부착, 홍보 등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

제 4 장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의 현황 및 분석

제1절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분석

제2절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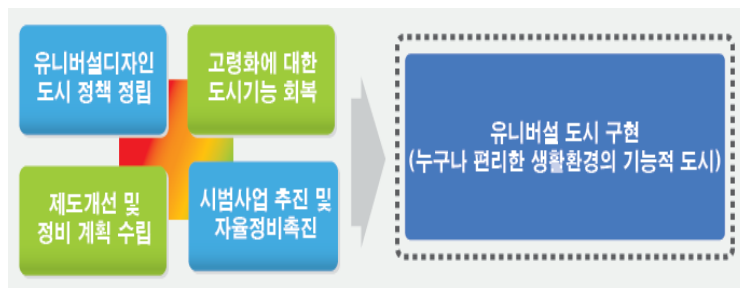
제3절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분석

제4절 분석의 결과

제4장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의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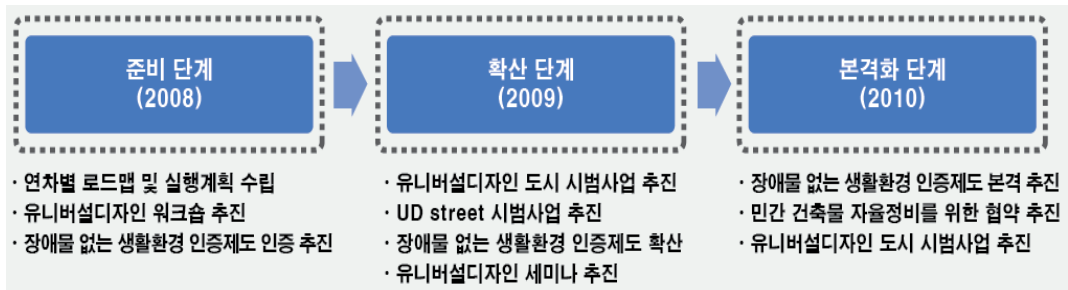
제1절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분석

- 다른 선진국들의 건축시설물에서의 장애인 배려와 비교할 때 우리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청사는 전국최초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1등급을 받는 성과를 얻었음
- 또한 이를 계기로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과 정비를 통한 사회적 약자가 배려된 기능적 도시를 구현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음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확산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자율정비 촉진을 유도하였고, 특히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개념의 인식과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음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점수 부여 및 관련 정책, 사업 시행 시 혜택 부여 등 진행하여 왔음
- 구체적으로 2008년 4월 기본계획수립 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구분하자면 ①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②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의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개발 ③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대 시민 홍보정책, ④유니버설디자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분류가능



[그림 4-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구현 추진방향

- 대외적으로는 BF인증사업 성과로 국토해양부장관 기관표창(2009년 12월)을 수상하였고, 2009년 12월 개최된 국제공공디자인공모전(주최:한국공공디자인 지역지원재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을 평가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내용상으로는 배리어프리에 국한된 제한적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4-2]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구현 사업 추진단계

- 따라서 민선5기 시책 구상 및 정책 방향은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수행하여 온 정책들을 평가·분석하여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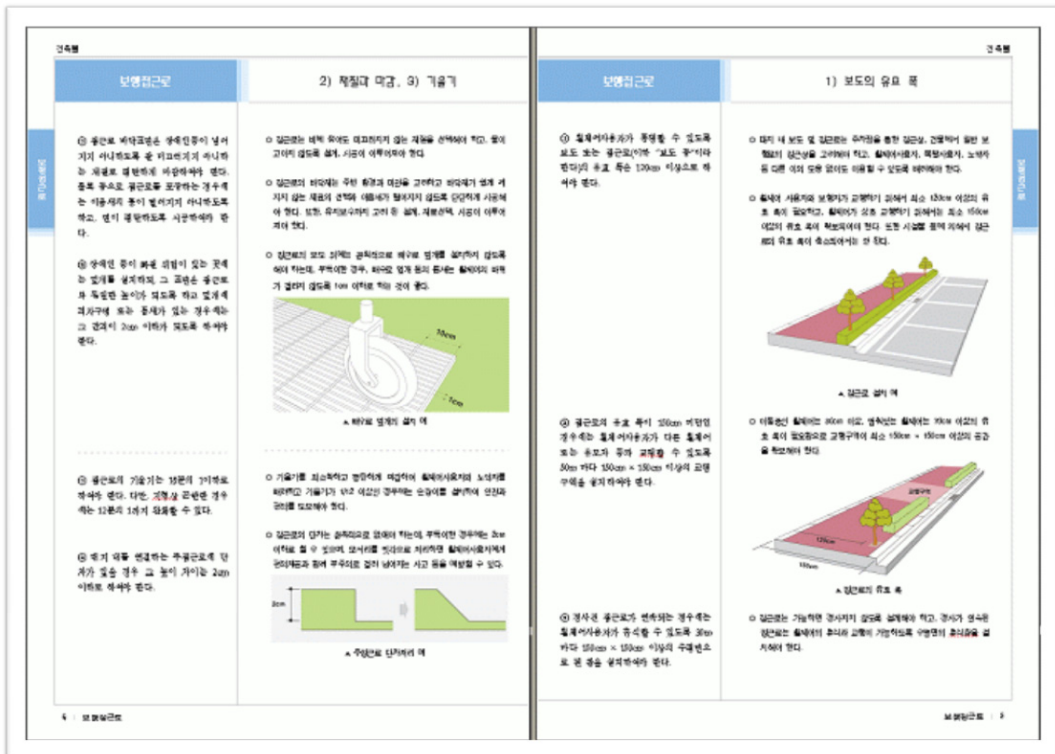
제2절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현황분석

1.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제작 목적

-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구현
- 대전시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기준마련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개념의 인식과 이해 증진
 - 제품과 환경디자인의 설계단계부터 장애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노약자만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생활환경 구현이 목적

2.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구성

- 매뉴얼의 좌측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의 관계법령으로 기준제시
- 매뉴얼의 우측은 권고사항과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제공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포함하고 있어 인증을 위한 참고 매뉴얼로 활용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지침 제공
 - 제품과 환경디자인의 설계단계부터 장애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노약자만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생활환경 구현이 목적



[그림 4-3]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건축물 부문

3.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 정기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UD교육 및 인식확산
- 2010년 6월 현재 4차례에 걸쳐 많은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조언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해 왔음

〈표 4-1〉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내용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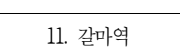

1차	주 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구현을 위한 워크숍			
	토론		일시	
	관련전문가 5인		2008. 4.22(화)	
			참석대상	
			시·구 도시 및 관련공무원, 시민	
	제1 주제발표		제2 주제발표	
발표자	최승철	발표자	김인순 팀장	
소 속	건축과 도시디자인	소 속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목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의 필요성과 매뉴얼 제작	제 목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내 용	1. 유니버설디자인 및 배리어프리의 개념과 필요성 2. 매뉴얼제작의 목적, 구성 3. 정책 추진목표 4. 총괄사업계획 5. 주요사업 세부 추진계획	내 용	1.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필요성 2. 인증제도의 정의, 근거 3. 인증신청 절차, 방법 4. 인증효과 5. 해외 인증제도 사례 6. 인증의 향후 방향	
2차	주 제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및 BF인증제도 업무교육			
	일시		참석대상	
	2009. 2.13(금)		시·구 도시 및 관련공무원, 시민	
	제1 주제발표		제2 주제발표	
	발표자	이명주 교수	발표자	김인순 팀장
	소 속	명지대학교	소 속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목	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필요성과 구현방안	제 목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인증사례 및 인증절차	
내 용	1.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2. 공간복지의 사례 3. 해우갤러리 사례 4. 위생시설(화장실) 사례	내 용	1.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필요성 2. 인증제도의 정의, 근거 3. 인증신청 절차, 방법 4. 인증효과 5. 국내 인증제도 사례 6. 해외 인증제도 사례	

3차	주 제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와 실천방안”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			
	행정지원		일시	
	참석자 교육이수 시간인정 (2시간)		2009.11.20(금)	
	제1 주제발표		제2 주제발표	
	발표자	이창호 사무국장	발표자	박신원 연구원
	소 속	UD 포럼	소 속	한국토지구택연구원 BF인증센터
	제 목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와 실천방안	제 목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의 조성 (공원부문)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2. 과거 장애인 전용제품 3. UD로 생각해본 주위환경 - 각종 오류 4. 사용자 조사에 의한 제품개발사례 5. 공공시설물 UD적용사례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의 기본개념 및 이해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 3. 인증 방법 4. 인증사례 소개 5. 향후 추진방향 	
4차	주 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과 실천			
	토론자		일시	
	김상식교수등 6명		2010. 6.28(월)	
	제1 주제발표		제2 주제발표	
	발표자	류현국 교수	발표자	박진수 교수
	소 속	츠쿠바 기술단기대학	소 속	목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제 목	유니버설디자인 개발사례	제 목	아하!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거였구나!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측면의 UD사례 2. 정보측면의 UD사례 3. 상품측면의 UD사례 4. 교통측면의 UD사례 5. 츠쿠바의 UD사례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D 용어 설명 2. UD 개념 이해 3. UD 적용 사례 	

4.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현황

- 2010년 7월 현재 대전광역시청사 등 총 15개의 시설 신청
- 2010년 7월 현재 대전광역시청사 등 7개소 인증(전국최초, 최다실적 보유)

<표 4-2> 유니버설디자인(BF인증) 신청기관 현황

1. 대전광역시청사					6. 노인종합 복지회관		
							
2. 용운국제수영장					7.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3. 한밭체육회관					8. 장애인근로사업장		
							
4. 대전CT센터					9. 중구문화동주민센터		
							
5. 노은1동 주민센터					10. 대전광역시사구청사		
							
11. 갈마역					15. 종합문화복지관		
							
12.대전컨벤션센터					13. 대청호자연생태관	14. 대덕종합사회복지관	15. 종합문화복지관
							

1) 인증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및 어려움

- 인증의 종류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되고, 각 인증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되며, 인증 유효기관은 5년으로 되어 있음. 본인증은 공사 준공 이후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인증을 설계단계에서 시행하고 있음. 신청인의 요청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시공중에도 예비 인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그러나, 각 기관의 관리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인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심지어 인증을 신청한 상태인지도 모를 정도로 업무의 인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인증절차에 대한 홍보 특히 간략히 도식화된 홍보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인증을 위한 형식적인 시설설치

- 기 준공되어 운영중인 시설물들이 BF인증을 위해 추후 시설설치공사를 한 경우가 대부분임.
- 그러나, 무리하게 인증평가기준에 맞추다 보니 낮은 핸드레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핸드레일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음
- 남자화장실의 소변용 장애우 변기의 핸드레일은 공간에 대한 배려가 없이 설치되어 오히려 좌변기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음
-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에는 입구센서를 설치하여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통일되지 못한 안내표시

- 안내촉지도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어 편리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일반인의 보는 경우 오히려 이해가 어려워 공통적으로 인지하기 쉽도록 일 반표기와 점자가 병행표기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화장실의 표시는 남자는 파랑색, 여자는 빨강색으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은 디자인과 색채로 표기되어 있는 곳이 다수 존재함
- 화장실 안내표시가 많게는 3중으로 중복 설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장소도 다수 존재함.

4) 기 타

- 전반적으로 화장실에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기저귀 갈이대가 있는 경우도 많으나, 여자화장실에만 설치한 경우도 있어 남자들이 유아를 동반할 경우는 불편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BF인증을 위한 시설설치 후 사용빈도가 떨어진다고 하여 관리가 소홀한 곳이 많은 실정임.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설치된 시설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할 필요가 있음.(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 지하철의 경우는 출구에서 일반도로와 연계되는 점자블록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됨
- 지하철 내의 안내표시는 일반인 기준으로 시선 상부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휠체어 및 어린이 등 시선이 낮은 이용자를 배려한 바닥을 이용한 안내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외국과 달리 자판기의 디자인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을 위한 배려는 전혀 되어있지 않아 국제화도시를 지향하는 현 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안내방송의 경우도 외국인을 위한 안내방송은 전무한 상태임. 문화공간시설에는 다소 안내표기가 되어 있으나, 영어에 국한된 상태임
-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새터민 증가에 따른 언어표기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알기 쉬운 아이콘으로 표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분석

1. 조사 목표의 설정 및 설문 설계

-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정책연구에 대해 고찰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있어,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과 정책의 필요성, 적용현황, 향후 시설확충 필요성 등을 파악하여 보다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접근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대상의 의식조사를 실시함.
- 보다 실효성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체계도를 작성하여 목표로 하는 도출사항을 정리함.<표 4-3>

<표 4-3>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조사 체계도

정책에 관한 인식수준	인식수준 및 요구도	시설확충	특정대상·시설에 관한 의견
• 설문내용 -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인식수준 - 대전광역시가 지향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정책에 관한 의견	• 설문내용 - 해당시설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수준 - 필요로 되는 시설	• 설문내용 - 시설확충의 요구도 - 요구 이유	• 설문내용 - 다문화 가정의 측면에서 접근한 대전광역시의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 - 장애인화장실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 설문목적 -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인식수준	• 설문목적 - 각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수준 파악 - 향후, 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설 파악	• 설문목적 -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도 및 이유 파악	• 설문목적 - 필요성 파악 - 용도변경에 관한 의견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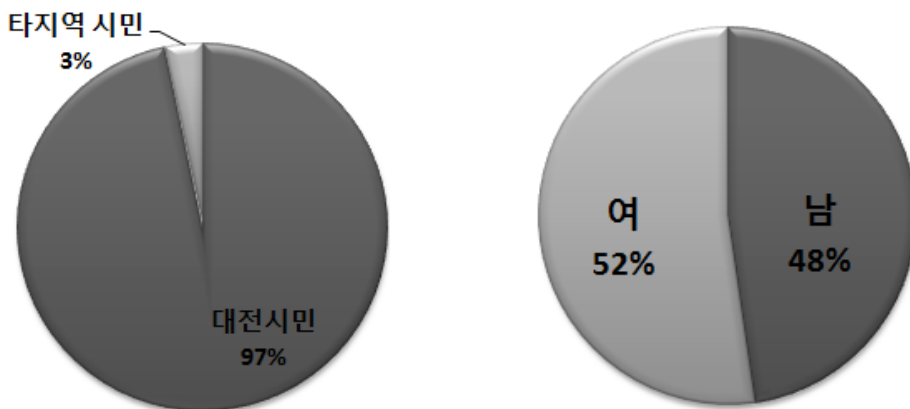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파악

2. 의식조사 방법

- 대전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대의 시민 154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 조사 기간은 2010년 8월 12일부터 8월 18일 7일간에 걸쳐 시행
- 유니버설디자인과 배리어프리에 관해 사전지식이 부족한 대상자를 위해 설문지에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사전 숙지한 설문조사원이 응답자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설문지의 문항을 함께 기입하는 방식으로 의식조사를 시행

•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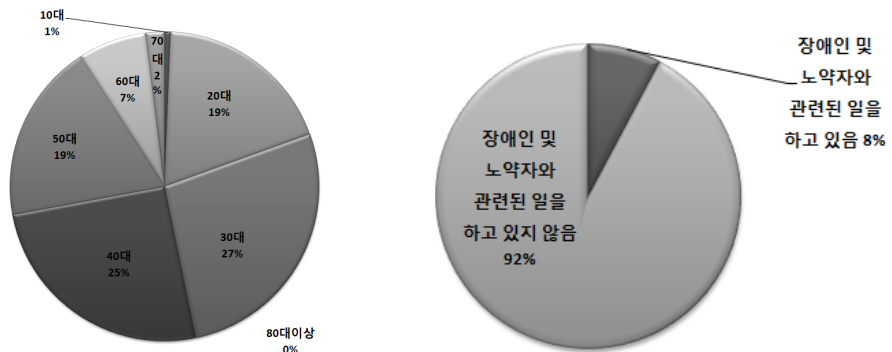
- ✓ 본 의식조사는 154명(대전시민 97%, 타지역 시민 3%)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남녀비율은 여성 52%, 남성 48%로 집계되었음
- ✓ 응답자 연령비율은 10대(1%), 20대(19%), 30대(29%), 40대(25%), 50대(19%), 60대 (7%), 70대(2%), 80대 이상(0%)으로 구성됨



[그림 4-4] 설문대상자 주거지 · 성비

● 장애인 또는 노약자들과 관련된 업무 종사 여부

- ✓ 장애인 또는 노약자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92%를 접하고 있음
- ✓ 설문대상자들이 장애인 및 노약자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 않고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장애인, 노약자를 많이 접하지 않아, 다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각종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경향을 보였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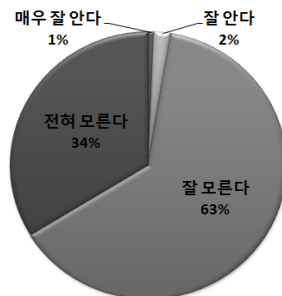


[그림 4-5] 설문대상자 연령대 비율과 업무의 연관성

3. 의식조사 결과분석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인식수준

-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인식수준에 관하여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4%, 잘 모른다는 응답이 63%로, 유니버설디자인의 홍보 및 교육이 시급한 실정
- ✓ 다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각종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보다는 홍보 등의 부족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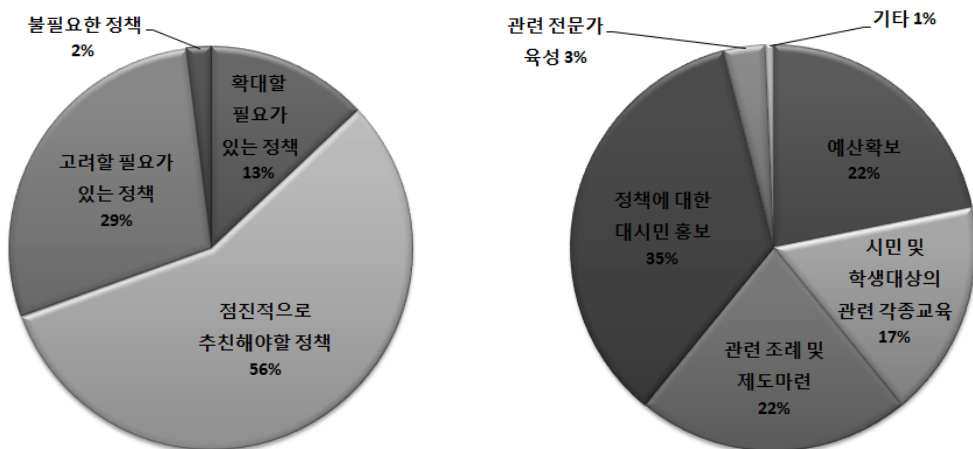
[그림 4-6] 인식수준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정책의 필요성

- ✓ 필요하기는 하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고, 유사규모 도시수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책임(29%), 매우 필요한 정책이며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정책임(13%), 지금은 불필요한 정책임(2%) 등의 순으로 응답
- ✓ 이러한 조사결과는, 시민들이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도입에 적극성은 보이지는 않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당위성 제고 및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으며, 관련조례 및 제도마련(22%), 예산확보(22%), 시민 및 학생대상의 관련 된 각종 교육(17%), 관련 전문가 육성(3%)등의 순으로 응답
-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사항임은 응답자들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차후 제도마련, 예산확보 등의 정책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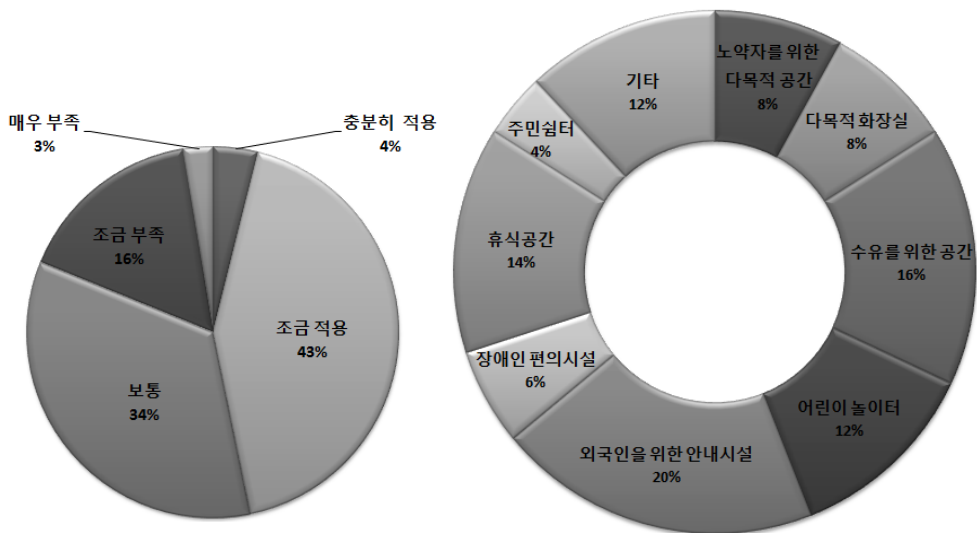
[그림 4-7] 도시정책의 필요성과 필요사항

• 해당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수준

- ✓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시설의 평가에 있어서, 조금 적용되었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통(34%), 조금 부족하다(16%), 충분히 적용되었다(4%), 매우 부족하다(3%)의 순으로 나타남
- ✓ 조금 적용되었다는 응답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며, 매우 부족하다, 충분히 적용되었다는 응답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BF인증 등의 행정적인 노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차후 각종 교육 및 대 시민홍보 등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도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충분히 적용되었음을 인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요구됨

• 해당 시설에서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

- ✓ 외국인을 위한 안내시설(20%)이 가장 많고, 수유를 위한 공간(16%), 휴식공간(14%), 어린이놀이터(12%), 다목적화장실(8%), 노약자를 위한 다목적 공간(8%), 장애인 편의시설(6%), 주민쉼터(4%), 기타(12%)등으로 집계됨
- ✓ 기타에는 유아 보육시설, 건물이용 및 업무과약을 위한 안내체계, 도로, 사무실 등이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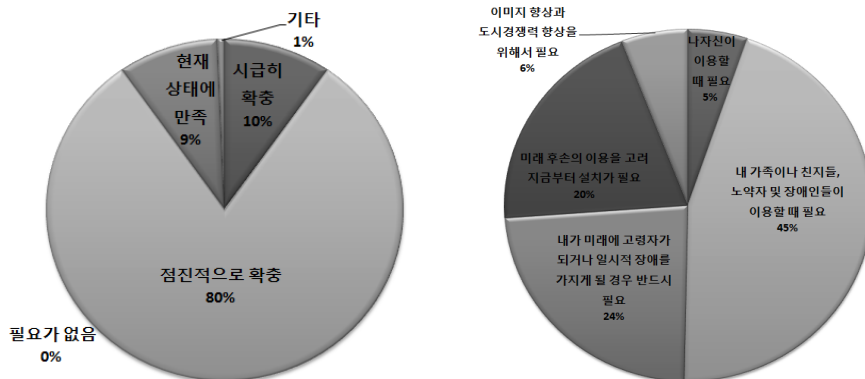
[그림 4-8]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수준 및 필요한 관련시설

• 공공시설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시설 확충의 필요성

- ✓ 점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8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급히 확충 10%, 현재상태에 만족이 9%의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0%로 집계
-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점진적인 확충이 많다는 것은 세계 선도도시인 이미 유니버설디자인의 물적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시급히 대전시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립 및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공시설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이유

- ✓ 내 가족이나 친지들,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이용시 필요가 4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미래에 고령자가 되거나 장애를 가질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24%, 미래 후손의 이용을 고려 지금부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0%, 이미지 향상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6%, 나 자신이 이용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이 5%로 집계 됨
- ✓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임을 확립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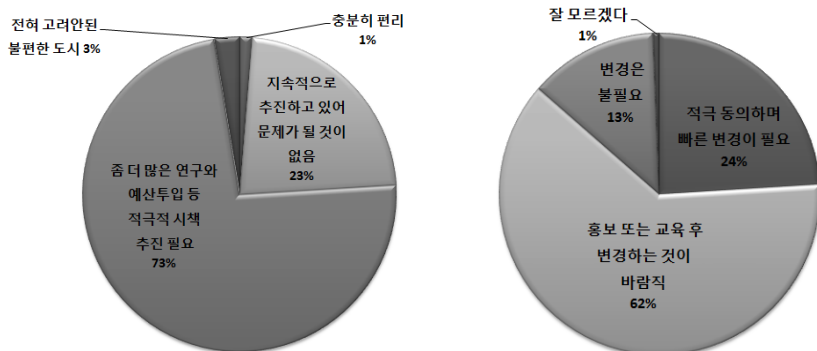
[그림 4-9] UD적용 시설 확충필요성과 이유

● 유니버설디자인의 측면에서 예상한 외국인의 생활 편리도

- ✓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예산투입 등의 적극적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3%를 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23%를 점함. 또한, 매우 불편한 도시이고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의견이 3%, 충분히 편리한 도시라 응답한 의견이 1%에 그치고 있음
- ✓ 국제도시로의 성장을 전제로 한 외국인의 생활 편리도에 있어서는 연구 및 각종지원이 부족한 현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장애인화장실을 다목적화장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 ✓ 일반인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공간임을 홍보 또는 교육 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2%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극 동의하며 빠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 장애인을 위하여 변경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로 뒤를 잇고 있음
- ✓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86%의 인원 중 62%가 홍보 또는 교육 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다목적 화장실로 용도를 변경하여도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 현실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제화 도시와 고령화사회 진입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86%를 점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변경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후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10] 외국인 생활편리도와 다목적화장실의 용도변경

제4절 분석의 결과

- 대전시가 추진 중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과 정책의 필요성, 적용현황, 향후 시설확충 필요성 등을 파악한 본 의식조사의 결과 시민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 됨
- 다만, 정책에 대한 인식이 적을 뿐,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필요성 및 향후 지원에 대한 기대 및 요구는 다수 존재함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대 시민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인식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 현 수준의 인식도에 있어서, 기 추진된 BF인증 등의 사업의 평가는 비교적 바람직한 수준에서 집계되었으며, 이는 대전시의 행정적인 노력을 인지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임
- 하지만, 향후 선진국 수준의 기반시설의 확충과 시민인식의 정립이 확보될 것이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 및 발전된 수준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설의 도입이 예상됨
- 차후 각종 교육 및 대 시민홍보 등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도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충분히 적용되었음을 인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요구 됨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정책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도입에 적극성은 보이지는 않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당위성 제고 및 교육,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됨
-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임을 확립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됨
-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BF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배려하려고 하는 정책 및 인프라 기반이 정착된 환경을 가진 선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구되는 것 또한 사실임을 알릴 필요가 있음
- 아직 정책 및 인프라 기반이 선진국 수준까지는 정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선도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각종 물리적·소프트웨어적 사업시행 및 지원, 홍보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됨

제 5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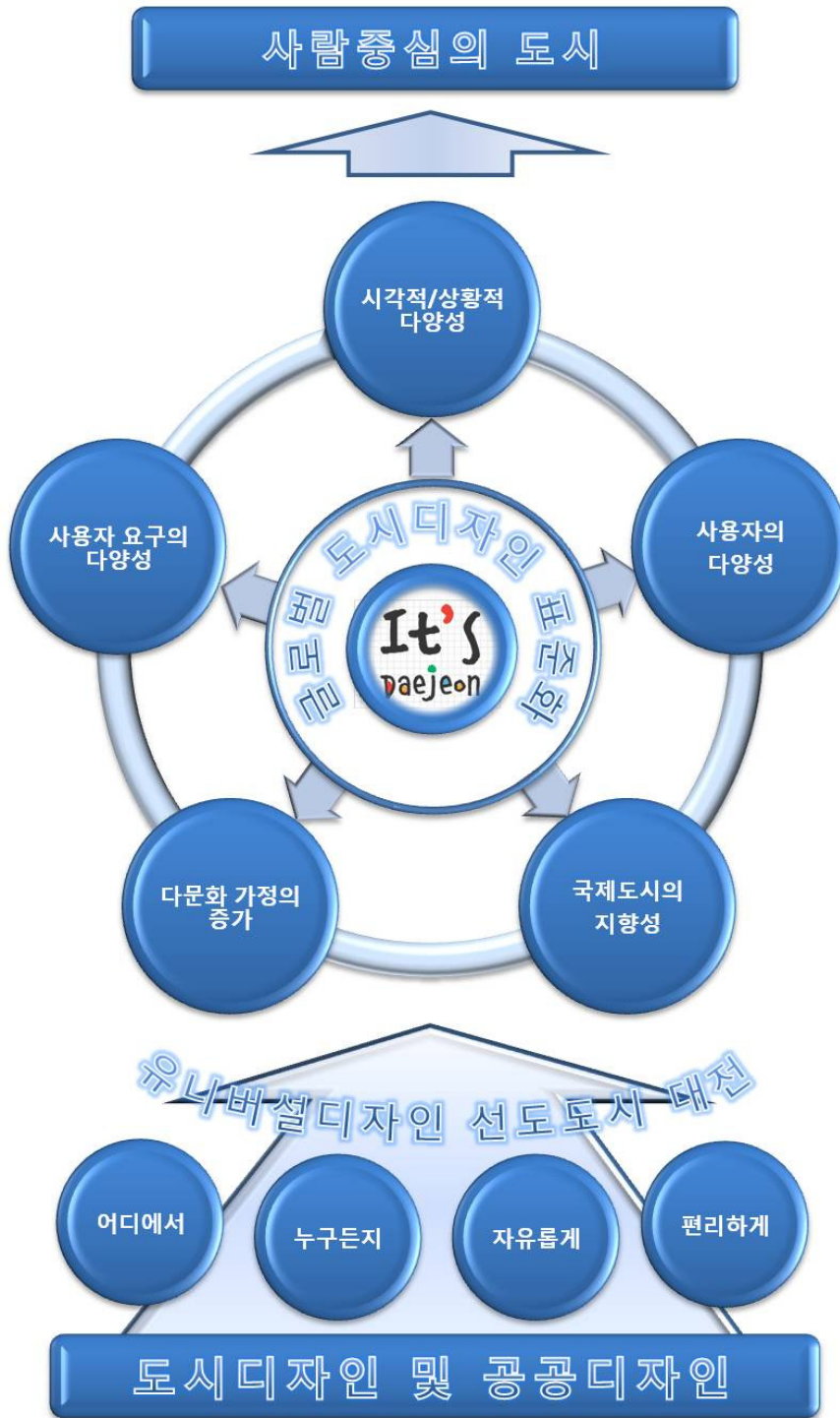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제1절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의 개념정립
 - 제2절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비전과 전략
 - 제3절 실행을 위한 중점추진과제와 지원체계
 - 제4절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추진 로드맵
-

제5장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의 개념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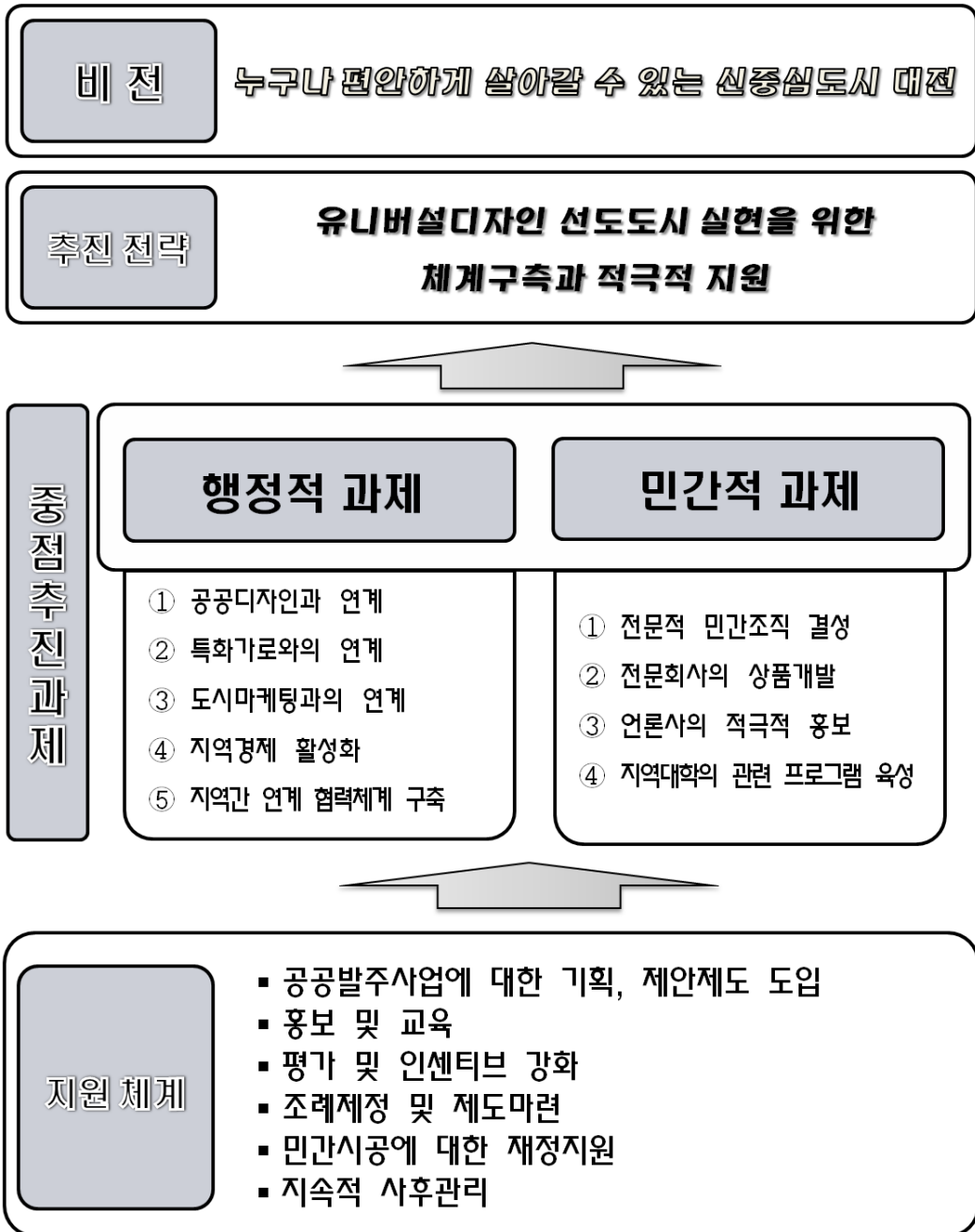
-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정책은 배리어프리처럼 고령자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입각하여 모두에게 유익한 모두를 위한 것에서 출발함
- 최근 장애인 및 고령자 등 특정계층에 대한 배려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계층을 구분 짓는 이원적 사고를 배제하고, 사회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정착시킬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정책의 부합이 필요
- 원칙적 측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에 입각하여 배리어프리디자인 개념에 더해서 접근 가능한 디자인, 적응 가능한 디자인, 세대를 초월한 디자인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포함함
-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의 개념은 시각적·상황적 다양성, 사용자의 다양화, 국제 도시의 지향성, 고령화 사회 진입, 다문화적 가정의 증가, 사용자 요구의 다양성 등을 보다 넓게 수용하는 개념으로서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 도시디자인의 표준화 개념으로 적용함
- 즉,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원칙에 따라 대전시의 남녀노소, 다문화가정, 외국인, 거주하는 사람이나 방문객에 관계없이 모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조성하고, 모두가 공평한 인간중심의 도시를 추구함 [그림 5-1]



[그림 5-1]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도

제2절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비전과 추진전략

-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정책은 배리어프리의 개념과 달리 특정한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는 정책이 아닌 남녀노소 및 외국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전시 어디에 거주하든 “누구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를 만들어 가자는 것을 지향함
- 대전시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 스스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조성하며, 행정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대전시의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시책에 있어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보다 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원칙에 입각한 정책 수립이 필요 함
- 국내 현실에 비해 미국, 일본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선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국가들 역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배리어프리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여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계획적 특성상 상호간의 구분이 애매하여 두 개념을 혼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대전시에서의 선도적 개념정립이 필요
-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사회의 관심증대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자인도시를 정책의 핵심전략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안정화된 지방자치제도 과열과 낭비, 비효율과 불합리를 극복하고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성숙해야 할 시기로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시혜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자생력을 키워가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려는 민선 5기 출발
- 민선 5기의 출범과 함께 대전시는 『대한민국 新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대전의 새로운 비전실현을 위해,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 속의 대전’ 이라는 3대 시정방향을 정립
- 대전시의 유니버설도시디자인 선도도시화의 정책에서는 “누구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를 만들어 가는 것을 비전으로 함[그림 5-2]



[그림 5-2]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비전 및 추진전략

제3절 실행을 위한 중점추진과제와 지원체계

1. 행정적 과제

1) 공공디자인과 연계

- 도시가 공유하는 모든 영역 중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치의 인식에서부터 도시 업그레이드는 출발하며, 이는 지난 경제발전 우선주의의 시대에서 탈피하여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에서 출발함
- 공공디자인은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나 관련 법률 검토의 공통점은 공공디자인은 문화산업이자 문화예술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깊은 관계가 있음
- 서울시의 ‘고품격 디자인도시 서울’ 을 비롯하여, ‘해양디자인도시 군산’, ‘디자인도시 영월’ 등 군소도시를 막론하고 지자체 정책 브랜드로 디자인을 내세우고 있으며, 디자인 서울, 안양 아트시티 21, 포항 테라노바 사업 등 공공디자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의 사업의 필요성은 크게 4가지로 ①도시개발에 대한 가치 및 목적의 변화 - 시 부가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 ②삶의 질 추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 증가 - 참여시대의 도래, ③정체성 표현에 대한 요구와 당위성 증대 - 지역구성원의 지역화 문제, ④정보도시로의 이행 - 복잡한 시스템 시대로의 진입을 말할 수 있음
- 공공디자인 사업은 뉴거버넌스(민관협치)와 커뮤니티 구축을 원칙으로 주민지향과 주민참여를 강화
- 인간 삶의 질 제고와 주민지향과 참여 강화라는 측면에서 유니버설디자인과 기본 목적은 동일하다고 판단됨
- 대전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도시민의 사회·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디자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공공디자인과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특화가로와 연계

-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특화가로 조성 사업’ 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정체성(Identity)을 정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그 동안 ‘특화가로’란 문화의 거리, 역사의 거리, 영화의 거리, 쇼핑의 거리 등으로 목적에 따라 지칭되는 가로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본 과제에서는 ‘도시 공간 안에 있는 특정거리를 일정한 테마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특성화 또는 전문화시킨 가로’를 특화가로의 개념으로 사용함
- 특화가로의 특징으로는 ①중심테마가 되는 특정자원의 밀집성이 높음, ②지역마다 다양성을 갖고 있음, ③다른 가로와는 확연히 차별되는 정체성을 보유함이 있음
- 가로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불과하며, 이러한 가로가 특화가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화자원, 정보서비스, 행사·연출, 체류·오락, 공공서비스, 가로의 물리적 자원이라는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함으로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유니버설디자인측면에서도 충분히 만족시켜야만 특화가로의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집객의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추진 하여야 사업의 효과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화가로의 연계는 선진국의 사례(III장 3절 및 그림 5-3)에서와 같이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음



[그림 5-3] 프랑스 리옹시와 대전시 특화가로의 이미지

3) 도시마케팅(장소마케팅)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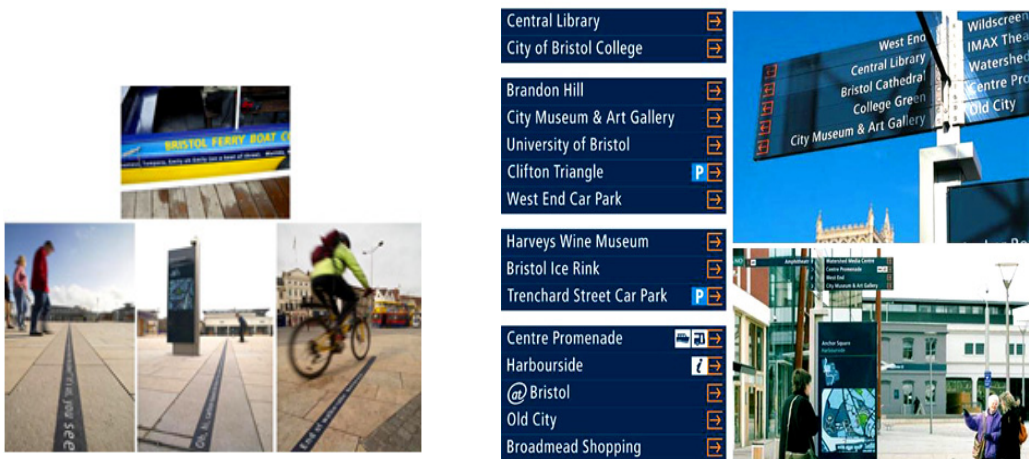
- 도시 및 장소가 기존의 퇴락한 이미지를 재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전략들이 중요한 지역정책으로 부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장소마케팅’, ‘도시마케팅’으로 장소와 도시를 상품화·차별화한 전략임
- 장소마케팅이란 ‘장소를 관리하는 공적·사적 주체들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포함하는 현상으로 이들이 기업가와 관광객 심지어 그 장소의 주민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많은 도시들의 도시마케팅 전략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 및 자연환경을 토대로 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개발·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역시 경제적 요소로 부터 탈피 할 수 없는 만큼, 시범사업 또는 선도사업의 경우는 도시마케팅 또는 장소마케팅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만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부동산 측면에서도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건축물은 도시의 경관을 증진시키면서 도시민 모두에게 자부심을 주는 만큼, 지역개발측면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상징성이 큰 경관요소를 조성하는 것이 도시마케팅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유니버설디자인이 고려되어야 도시가치가 배가될 수 있음



[그림 5-4] 부평시장의 지역마케팅 및 룩셈브루크 요새박물관

4) 지역경제 활성화

- 최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이 점차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공간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이 지역 활성화를 가로 막고 도심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음
- 21세기의 도시 중 활력이 있고 매력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알려진 유명한 도시에서는 가로와 광장, 공원 등 보행자의 활동을 유발하는 좋은 질의 공간을 많이 볼 수 있으며, 모든 대상에 쾌적하고 안전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이 경제적 효과를 제고 시킨 브리스톨시 사례를 들면, 영국 남부의 작은 해안도시 브리스톨(Bristol)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도시환경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디자이너, 예술가, 도시계획가,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BLC(Bristol Legible City)프로젝트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도시정보가 쉽게 읽혀지는 도시’를 구축하였음. 그 결과 브리스톨시의 고유한 인상에 해당하는 정체성이 표현되었고, 공공디자인개선과 함께 도시가 생기를 찾고 관광객 수가 증가되었음
- 유니버설디자인은 단순한 기능적 측면에서만 개선이 아니라 브리스톨시 처럼 쇠퇴해 가는 도시의 정체성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그림 5-5] 브리스톨의 공공사인물

5) 연계·협력체계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조성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도로정비사업, 주거정비사업 등 분화된 도시개선사업 체계를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통합하여 선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단일사업들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사업이 종결되어 주변지역의 환경을 검토하지 못했으나,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정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통합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공공기관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은 설계초기부터 입주하는 관청과 긴밀히 연계하여 적용시켜야 할 것임. 특히,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시설관리상의 유의점 등에 대해서는 ‘(가칭)유니버설디자인시설유지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설의 변경이 일부 있더라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이 무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함
- 선도사업의 경우 시간별로 구분하여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시·구간, 부서 간의 연계 방법과 협력체계를 사전에 모색해야 함
- 전문 시민조직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구축을 통하여 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모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시의 계획부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각 시설의 운영·관리에 의한 대응을 촉진시켜야 할 것임. 또한 각 공공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우수사례 등의 빠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을 해야 함
- 조례가 제정되면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구성은 필수 조건이지만, 사전에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전문소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담당토록 연계를 유지할 것
- 유니버설디자인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시범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협의회 등과 연계·협력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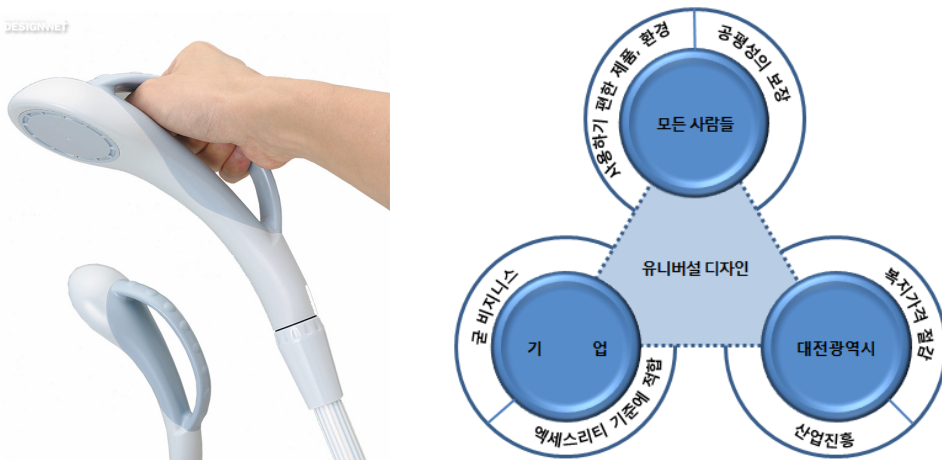
2. 민간적 과제

1) 전문적 민간조직 결성

- 정치문제, 경제문제, 환경문제, 문화보전 등을 조직의 목표로 하여 운영되는 시민단체는 많으나, 아직 우리사회에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실천연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등이 있으나 장애인 권리를 위한 시민단체가 대부분 임)
- 2008년 현재 일본의 공공디자인 개혁은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음. 1라운드가 철저하게 관(官) 주도 형태였다면 2라운드는 1라운드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도시의 모든 요소에 디자인 개념을 이식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
- 지금까지 대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관주도였다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관의 정책시행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의 결성을 지원하는 것도 유니버설디자인 개혁의 수단이 됨
- 대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와의 연대에 의해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고됨. 즉, 공공공간 내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의 정비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용자,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주변사업자 등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함
- 학계 및 관심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동참을 구하고, 자료제공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전문적 단체를 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조직된 단체와 연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정비방침을 제작하거나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함께하여 개선점을 찾아가는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맵』을 작성하여 함께 유니버설디자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임을 이해시키고, 전문 단체를 통해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됨

2) 전문회사의 상품개발

- 유니버설디자인은 이론상으로는 ‘어는 누구나 득이 되는 사고다’ 라고 정리할 수 있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님. 특히, 유니버설디자인은 기업에 있어서는 최대의 적이자 최대의 친구가 될 수 있음. 즉, 기업과 지방정부가 산업진흥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야 할 부분임
- 유니버설디자인은 ①노인과 중년의 증가, ②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③IT의 발전과 보급, ④국제적인 규격화의 물결, ⑤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5가지 배경 때문에 최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도 각광받고 있음
- 국제화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기업경쟁력 향상과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지역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내 기업체에게는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저금리의 대출제도를 고려하거나 각종 세금공제의 혜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을 생산해낸 지역기업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보조금 지급 또는 인증수여 등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5-6] 유니버설디자인 제품과 WIN-WIN-WIN 컨셉

3) 언론사의 적극적 홍보

- 최근 인터넷의 포털사이트 등으로 인해 언론사의 역할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중앙중심의 뉴스보도 체계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다방면에서 이바지 하고 있음
- 특히 지방신문으로서 지역을 대표하고자 많은 스포츠행사, 문화행사 등의 개최를 통해 지역민으로 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고 있음
-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홍보를 하고자 하는 지역언론사와 함께 시리즈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 (예-기획시리즈:생활속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찾아서)
- 기획시리즈의 구성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대전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흔들림이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지역대학의 관련 프로그램 육성

-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참여가 강조되는 만큼 대학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음. 즉 대학은 기본적인 교육기능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 환경개선에 적극 참여를 통해 현장 지식과 경험을 전달할 책임이 있음
- 지방의 일부 대학은 힘들었던 간판문화개선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성공한 사례도 있음. 마을 만들기와 같은 사업들은 교수가 직접 PM 또는 어드바이저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교내가 아닌 현장에서 계획하고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 언론으로 부터 주목받기도 하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의 홍보과 교육을 위해서는 대전의 지역자원이라 할 수 있는 많은 대학들과 산·학·연의 연계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의 프로그램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3. 지원체계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기획·제안제도 도입

- 유니버설디자인은 상품, 건축 공간 및 광범위한 공간 및 환경 등 다양한 범위에서 전개될 수 있으며, 공공건축 및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건축, 도시계획,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히 장애인정책 관련 전문가,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실무자, 디자인전문가 등의 참여가 필수적임
- 사업에 있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운영·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로 하지만, 예산집행의 한계 등의 이유로 행정중심의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
- 전반적인 사업추진의 흐름 및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전문가에 의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따라, 설계 및 예산변경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로서 사업추진 이전단계에서 타당성, 사업특성에 따른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리 체계를 검토·기획하는 기업 또는 시민들이 사전 유니버설디자인 기획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마련
-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제안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시설의 실제적인 이용자가 될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 제공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 민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사업계획 수립단계에 유니버설디자인 부문계획에 MA()로 지정,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
- 유니버설디자인 전략과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총괄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제안을 별도의 업무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기획제안에 따라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제안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지자체 예산집행 시스템의 개선 등이 필요

2) 홍보 및 교육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조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장애인, 노약자 등의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 도입에 관하여는 긍정적으로 관망하고 있으나, 현재 시민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음
- 장애물없는 건축물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민간시설 건축주의 인식부족과 인증을 받기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물없는 환경이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있다는 것을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인식이 개선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행정에서는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정보의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 조속히 요구됨 (대전인재개발원의 온라인 강좌 개설, 공무원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지원)
- 기 추진된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등과 같은 각종 행사의 개최를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가 될 시민들에게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홍보하고,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진척상황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설 소개,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지속적인 주의와 주목, 관심을 유도
- 공신력 높은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기관별 담당공무원 등 유관업무 담당자들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사업에 대해 쟁점을 진단하고 이슈를 제기하여 명확한 사전 홍보방안을 마련
- 홍보에 있어서는 다양한 홍보대상에게 일관된 메시지로 다차원적 홍보전략이 필요함, 즉 시민 및 국내 외 관광객, 여론 선도층 등에게 다양한 매체경로를 통해 단계별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에 있어서는 시민들로 부터 긍정적인 호감유발, 선호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경성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 내에 설치된 ‘유니버설디자인체험전시관’은 고령자 및 장애 체험 목적과 기능 그에 따른 형태의 조화를 이룬 우수한 일상생활 용품 전시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필요성과 사용편리성을 직접 체험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식확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중)
- 유니버설디자인체험전시관은 일상생활에서 간과되어 온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새롭게 인지할 수 있는 즐거운 체험학습공간이 될 수 있음. 또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학습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공간 역할을 함께 수행가능 함



[그림 5-7] 경성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전시관

3)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에 입각한 평가방식을 검토하여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의 이용편의성에 중점을 둔 기존의 평가 방식이 아닌, 유니버설디자인의 원리 및 원칙에 입각한 평가를 목표로 방법론 도출
- 대전시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각 공공시설 및 공간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이것을 토대로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사전에 작성, 자기체크가 가능하도록 배포
- 평가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바람직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및 정책에 대해서는 그 주체기관 및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유니버설 디자인 시행의 붐을 조성토록 함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의 도입된 건축물 건립 또는 공원조성 등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와 건축주에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의 도입 (사례)
 - 1997년 트라이포드사에서 커스터마이즈를 기초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Product Performance Program (PPP)을 개발하였고, 이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7원칙을 종합·정리하여 공공장소의 시설물 대상에 맞춰 커스터마이즈한 평가기준이 제작됨
 - 7원칙과 가이드라인, PPP의 가이드라인 항목을 요약·정리하여 키워드 추출
 - 35가지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여 34가지 키워드로 정리
 - 34가지의 키워드들을 의미와 의도하는 목적에 맞게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키워드들의 특성에 맞는 공평성, 인지성, 사용성, 편리성, 심미성, 안전성 등 6가지 평가기준을 도출
 - 제시된 유니버설디자인 적합성 평가항목
 - 도출된 평가기준에 따라 공공시설의 장소별 유니버설디자인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제안됨

〈표 5-1〉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과 PPP의 가이드라인 키워드 추출

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과 PPP 가이드라인을 결합	키워드
〈원칙 1〉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함	평등한 사용	평등 차별 사용법 불안 호감
	차별감의 배제	
	여러 가지 사용법 제공	
	불안의 배제와 안심의 확보	
	폭넓은 호감도	
〈원칙 2〉 사용에서의 유연성 확보	사용방법의 자유	사용법 신체적차이 조작의정밀도 조작속도 사용환경
	오른손·왼손잡이의 수용	
	정밀도의 수용·조작의 정밀함 요구 여부	
	작업속도의 자유도·서둘러도 사용 가능	
	사용환경에 대한 허용도	
〈원칙 3〉 단순하고 분명한 사용법의 추구	복잡함의 배제	복잡함 직관 이해 단순한조작 피드백 오감
	직관과의 일치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이해·누구나 이해가능	
	단순한 조작으로 유도·간단한 조작	
	조작에 대한 단서와 피드백	
〈원칙 4〉 모든 감각을 이용한 정보에 대한 배려	오감정보에 대한 배려와 활용	정보전달 인지수단 전달수단 알기쉬운 구조 보조전달수단
	정보전달의 증폭과 확보	
	인지수단의 선택과 가능성·복수의 전달수단	
	사용을 위한 정보의 정리·알기쉬운 정보	
	파악하기 쉬운 사용상의 구조	
〈원칙 5〉 사고의 방지와 오작동의 수용	보조전달수단의 호용	사고방지 위험요소 경고시스템 안전확보 현상복귀 안전성
	사고를 방지하는 기본구조나 구성	
	위험요소의 격리	
	사고의 예방	
	경고 시스템의 준비	
	사고발생시 안전의 확보	
〈원칙 6〉 신체적 부담의 경감	현상복귀의 수단	사용자세 불필요한 동작 신체부담 피로
	모든 안정성에 대한 배려	
	쾌적한 사용자세·자연스러운 사용자세	
	오래 사용해도 피로하지 않음	
	무의미한 반복동작 배제·불필요한 동작 배제	
〈원칙 7〉 사용하기 쉬운 사용공간 (크기, 넓이)과 조건확보	신체 부하량의 경감·신체부담이 적음	사용넓이 크기 보조자 배려 다양한 사용자
	감각기관의 보호	
	인지의 확보	
	사용위치의 확보	
	다양한 사용자에 대응	
	보조, 개조의 여지·보조자와 함께 사용가능	
	점유용적의 부담 경감·사용이 쉬운 넓이와 크기	
	운반이나 보관이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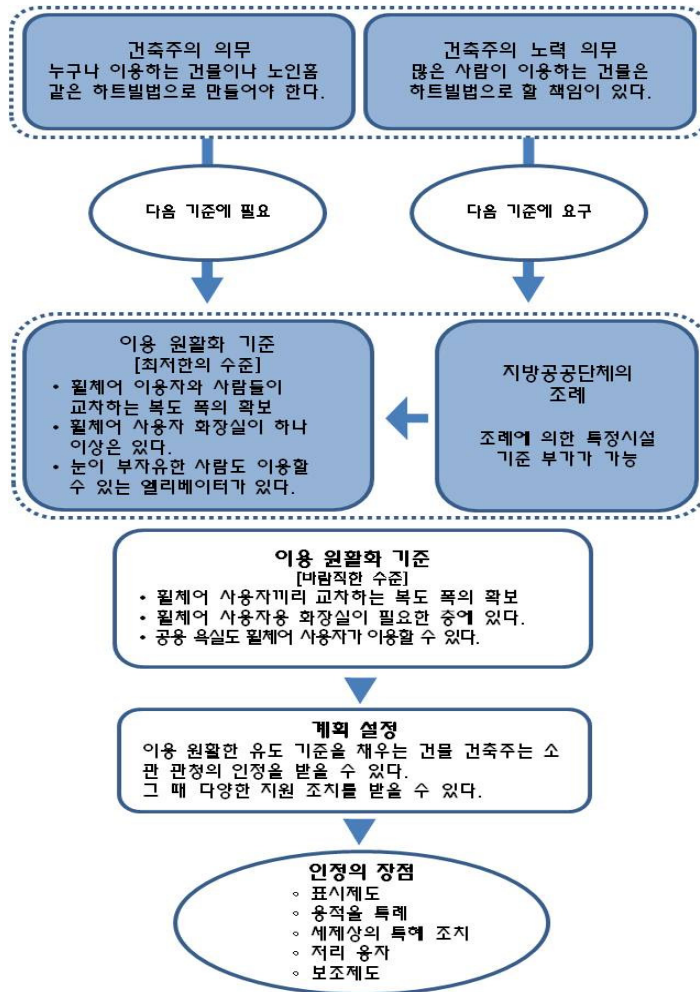
<표 5-2> 제시된 유니버설디자인 적합성평가항목 및 평가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의견
공평성	누구나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	신체적차이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지적 수준이나 경험의 유무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따름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때때로 사용이 불가능		
	사용에 차별이 없는지의 여부	사용 자체가 차별이라고 느낀다 사용 방법 등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을 느낀다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사용법의 복수 제공 등의 배려가 안됨 사용방법이나 용도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인지성	직관적인 이해 가능여부	사용방법이나 용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용방법이나 용도를 파악하는데 경험이나 사전지식이 필요함		
	인지 가능 여부	한가지 방법만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색의 콘트라스트가 적절하지 않다 픽토그램 등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텍스트만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크기와 위치가 부적절하다		
	인지의 오류 발생가능성	인지한 사용법이나 용도 등이 잘못되었다 정보의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		
	사용성의 단순함	사용에 있어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복잡한 사용법을 요구한다		
사용성	사용속도 제한	일정시간 내에 조작하여야만 한다 빨리 조작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간단한 조작	정밀한 조작을 요구한다 조작이 복잡하다		
편리성	편리한 사용	사용하기에 너무 크거나 작다 사용하기에 좁거나 넓다 사용자세가 불편하다 신체에 부담이 된다 보조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안정적인 사용	사용환경이 적절하지 않다 사용을 돕는 보조장치가 없다		
심미성	호감 여부	미관상 불쾌하다 재질이 적절치 못해 보인다 품질이 좋지 않아 보인다		
	모양과 형태	모양과 형태가 어울리지 않는다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안전성	사용의 안전	사용에 위험이 따른다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사용이 위험하다		
	위험발생 요소	물리적 위험요소가 있다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다		
	실수를 발생시킬 가능성	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수를 하였을 경우 현상복귀가 되지 않는다 실수를 하였을 경우 실수는 알리는 장치가 없다		
	심리적 불안감	사용하는 것이 불안하다 경우에 따라 사용이 불안하다 사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4) 조례제정 및 제도마련

- 일본에서는 각 자치체 별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및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임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및 용어가 일반시민들에게 접근하기 난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 인간친화(시민에게 친근한) 마을 만들기 조례”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시키는 것도 방안이 됨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시설이 시민생활 깊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 창출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되어 스스로의 의사에 근거해 자유롭게 행동하고,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확보되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촉진하며, 시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는 사업자 및 시민의 깊은 이해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시민, 업체의 현저한 공적에 대해 표창이 가능하도록 규정
-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주요골자
 - ①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적용수준이 우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인증을 부여하여 사업추진을 권장하고,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시민 및 그러한 사업추진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표창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깊은 관심을 유도하고, 또한 홍보의 효과도 도모함
 - ② 시는 시민이 생애를 통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의 추진에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충실히 마련함
 - ③ 시민을 상대로 한 기초적인 교육과 더불어, 실무를 담당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④ 사업자, 시민으로 구분하여 책무 및 역할을 분할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권한 등을 명백히 할 필요가 요구됨
 - ⑤ 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 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동참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및 그 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⑥ 시는 유니버설디자인 협의회를 두어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며, 시장은 전문가 및 사업자 등 학식과 경험을 가지는 자 이외에도, 실제 이용의 주체가 될 일반시민 및 장애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 해야함
- ⑦ 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하는 것에서 진정한 의미의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가 달성된다는 점에 유념하여, 대 시민 각종 행사 및 홍보·교육에 매진할 것



[그림 5-8]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따른 시민의 의무 (예시)

5) 민간시공에 대한 재정지원

- 유니버설디자인이 공공시설 및 공간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또한 시민들의 그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디자인은 물론 민간 시공업체 시공능력, 결합·적용되어야 할 제품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장애인 대상 용품 및 재료·부품은 국내업체의 상품의 종류와 질의 면에서 외국 업체에 다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도 다수 존재하여 설치를 피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는 일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설치와 새로운 상품의 생산을 늘려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상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지역의 유니버설디자인 상품 생산업체 및 시공업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으로 지역 특성이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전문 업체를 육성할 필요도 있음

6) 지속적 사후관리

- 지속적인 시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 공간에 있어서 설치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는 필수적인 사안임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도시·구역,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등이 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 상승 등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사후 관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리소홀 등의 발생하여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중과세 혹은 과징금 등을 통한 방지대책이 요구됨
-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담당부서 혹은 담당업체를 선정하고, 사후 고장 수리 및 부품교체, 정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함
-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답례로 UD관련 기념품 제공방안 모색)

제4절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추진 로드맵

1.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추진로드맵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변화하는 대내·외 도시디자인 정책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을 설정함
- 2008년부터 추진해온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정책추진 목표와 연장선상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추진 로드맵을 작성함

□ 기존의 정책추진 목표와 추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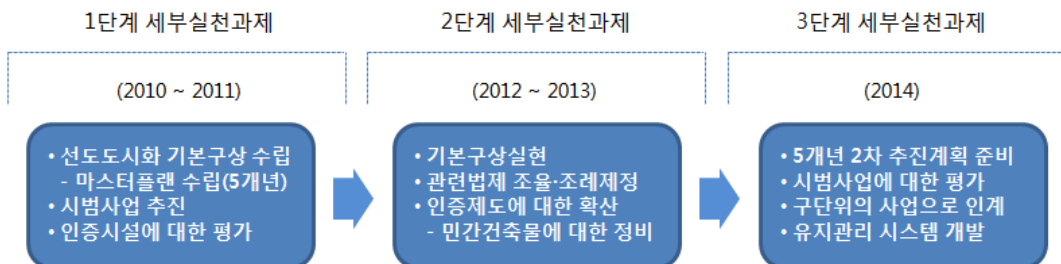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도시 구현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가 배려된 기능적 도시 구현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디자인 창출
-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생활환경 구현
 -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이동과 접근성이 좋은 생활환경, 기능적 공간 및 시설을 구역단위의 정비계획 수립으로 편리한 생활환경 구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의 기능 회복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의 구상·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적인 요소제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의 기능회복
 - 대전시청사, 각 구청사 등 공공시설물의 단계별 정비계획을 통한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확산
- 추진단계의 구분
 - 준비단계(2008년) : 연차별 액션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추진, 제도개선을 통한 기반마련
 - 확산단계(2009년)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1차 시범사업추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추진,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추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확산
 - 본격화단계(2010년)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2차 시범사업추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본격 추진, 민간건축물 자율정비를 위한 협약 및 정비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정책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선도도시화 목적
 -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 7원칙”에 따라 대전시의 남녀노소, 다문화가정, 외국인, 거주하는 사람이나 방문객에 관계없이 모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조성하고, 모두가 공평한 사람중심의 신중심도시를 추구함
-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정책의 비전
 - “누구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중심 도시”
- 9대 중점추진과제 : 행정적과제와 민간적 과제로 구분
 - ① (행정적 과제) 공공디자인과 연계
 - ② (행정적 과제) 특화가로와의 연계
 - ③ (행정적 과제) 도시마케팅과의 연계
 - ④ (행정적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 ⑤ (행정적 과제) 연계·협력체계 구축
 - ⑥ (민간적 과제) 전문적 민간조직 결성
 - ⑦ (민간적 과제) 전문회사의 상품개발
 - ⑧ (민간적 과제) 언론사의 적극적 홍보
 - ⑨ (민간적 과제) 지역대학의 관련 프로그램 육성
- 지원체계
 - 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기획, 제안제도 도입
 - ② 홍보 및 교육
 - ③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 ④ 조례제정 및 제도마련
 - ⑤ 민간시공에 대한 재정지원
 - ⑥ 지속적 사후관리

2. 유니버설디자인 중점추진과제와 지원체계의 추진 로드맵

-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실천과제는 중점추진과제와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세부실천과제로 정리되어 진행됨
- 여기서는 세부실천과제가 담아야 할 간략한 내용만 간략히 제시함
- 세부실천과제는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공공디자인 선도효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 1단계 세부실천과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2년간)이며, 주로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기본구상 및 일부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임
- 2단계 세부실천과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2년간)이며, 중점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수립된 기본구상을 실현, 보완하고 관련법제를 검토하여 조율하고 정비하는 업무 주요내용으로 함.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구 단위 사업으로 전개 추진하도록 함
- 3단계 세부실천과제는 2014년(1년간)이며,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5개년 2차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그 동안의 사업평가를 통해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 감.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구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체계를 확고히 함.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그림 5-9]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5개년 계획 단계별 세부실천과제 구상(안)

- 중점추진과제는 각각의 사업을 발굴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되면 지침 작성인 경우는 현황조사, 정책 및 기준수립,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작성으로 구성됨
- 사업의 발주방식은 산·학·연협력을 통해 학술과 기술부문의 연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 2단계 세부실천과제 중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조율하고 정비하는 것은 우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조례제정을 통해서 자치구별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및 계획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또한 자치구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사업의 실행에 있어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독자적으로 자치구에서 실행하는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능함
-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관련 사업의 실행을 주관하고, 관련 기관 및 부처 간 업무조정을 담당할 운영조직이 필요함. 우선은 구의 도시디자인팀 설치를 유도하고 팀 내에 유니버설디자인 업무담당자를 배치함
- 향후 2015년 이후 과제에서는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선도화 도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시범사업 및 자치구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표 5-3>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로드맵 구상안

분야/년도	추진분야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향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단계별 내용		유니버설 선도도시화 기본구상						
		시범사업의 추진						
		관련법체 정비						
		구단위사업추진				선도도시화 5개년 2차계획		
중점추진과제	행정적 과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공공디자인 매뉴얼 설명회 및 지침작성					
		특화가로	UD 시범사업 구상	제1차 시범사업 (1개소)	제2차 시범사업 (2개소)	제3차 시범사업 (3개소)	시범사업 평가 구단위사업 추진지속	
		도시마케팅	UD인증마크 제작	UD인증 홍보계획	유니버설디자인 축제개최		UD 심포지엄	UD 심포지엄
		지역경제 활성화		UD관련 업체 분석	표준화된 UD표준화 모듈 및 기준의 산업체 보급			
		연계·협력	위원회지침 마련	UD소위원회 조직				
	민간적 과제	민간조직	민간단체 결성지원		신진국연수			
		민간의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참여유도 정책						
		전문회사	전문회사 지원방안 수립	전문회사 아이디어전	중소기업 UD표준화 지원			
		언론사	언론사선정	UD시리즈 계제	언론사의 유니버설디자인 우수업체 포상			
		지역대학	지역대학 현황파악	UD 강의개설	지속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자료 개발			
지원체제	제안제도 도입	시민제안제 도 구상	시민제안 제도 도입	제도에 대한 평가				
	홍보 및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유니버설디자인 학교 프로그램개최	대전시 UD홍보관 건립 (기부체납)			
	평가 인센티브	기준사업의 유형화	평가지표 작성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행				
	조례제정 제도마련	도시디자인 조례 내용포함	개별조례 제정구성안	유니버설디자인 인조례제정	지속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제도마련			
	민간 재정지원		민간지원 계획안	민간지원	지속적 민간지원			
	사후관리	(가칭)시설유지매뉴얼 작성		5개 자치구 디자인과신설				

3.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대상지

□ 시범거리 조성사업 대상지의 개요

- 사업명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 사업목적 :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공간 조성
- 사업내용
 - 도로상 각종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요인 제거, 안전시설 보완, 도로면 정비 (단차·재질·색상 개선 등), 장애물 구역 녹지대 조성, 도로와 접해있는 주변 건축물 진입로 개선, 파고라·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 전신주 지중화, 가로등 교체, 열린 화장실 조성 등 사업 구간 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각종 시설 개선 사업포함
 - 시설 정비된 해당 구간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 고려사항
 - 최소 도로폭 3.2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
 - 자전거 도로 및 휴게공간 마련 등 시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
 - 대상지가 위치한 지역의 낙후도, 최근 보행로 정비시점, 보행자통행량 (보행자 서비스 수준), 시범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민선5기 공약내용 적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 ① 지역의 낙후도
 - ② 최근 보행로 정비시점
 - ③ 보행자 통행량
 - ④ 사업 추진 효과
 - ⑤ 추진 예정인 관련계획
 - ⑥ 자치구 추진(협조)의지 등

□ 대상가능지역 ① (안)

- 대상지명 : 동구 계족로 (용전네거리 ~ 중리네거리)
- 대상지 규모 : 구간길이 1.2km, 도로폭 35m (평균 보도폭 5m)
- 대상지의 특성
 - 대로 1류(35m) 보조간선 도로임에도 전주와 각종 전선 등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노면상태도 불량한 실정임
 - '09년 용전네거리~동부네거리 구간 보도시설물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동부네거리~중리네거리 구간 보도 정비사업이 진행중
 - 대상지가 정비될 경우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 보행환경개선벨트가 형성되어 보행자 편의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용전네거리~동부네거리~중리네거리 일대가 삼각형 형태로 일제 정비됨
- 대상지 현황사진



[그림 5-10] 동구 계족로의 현황

□ 대상가능지역 ② (안)

- 대상지명 : 대덕구 중리길 (한촌길~계죽로)
- 대상지 규모
 - 구간길이 570m, 도로폭 20m (평균 보도폭 3.5m)
 - 건축물 72개, 186개 점포 영업 중이며, 주업종은 음식점, 카페 등 요식업
- 대상지의 특성
 - 중리1지구 택지개발사업(1984~1987) 완료 후 약25년이 경과된 곳으로 각종공공시설물의 노후화, 파손에 따라 보행환경 정비 요구도가 높은 지역임
 - 주거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상시 유동인구가 많음 (1일 평균 10,800명)
 - 버스정류장 미설치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상시 보행자 다수 발생 / 시민 대부분이 중리길을 통해 한밭대로·계죽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 대덕구 「카페골목 재창조 사업」 이 추진 중에 있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자체적인 도로환경 정비는 어려운 실정
 - 시범사업으로서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 적용가능

선형개량 : 자치구의 설계반영 요청 사항으로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폭을 확장(3.5m~8.5m)할 경우 보행자 편의향상은 물론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 정온화 효과도 기대
 전신주지중화 : 전구간(570m) 전신주 지중화를 통해 도로 개방감 확보 및 보행 지장물 제거효과 기대

- 「카페골목 재창조 사업」, 「간판정비 시범사업」 과 연계를 통해 시범사업 효과 극대화 가능
 - ▶ 사업 시행시 자치구에서 주변지역 추가정비(주차장 건설 등) 약속
 - ▶ 대상지가 ‘11년 2순위 간판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간판 정비 사업과 병행 가능 / 1순위 : 동구 중앙로(대전역~목적교)

- 지역의 낙후에 따른 주민의 개선열망, 적극적인 사업참여 의지가 높음
 - ▶ 지역주민, 점포주, 건물주, 자생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추진 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음
- 시범사업을 통해 젊음, 문화, 볼거리가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경우 불건전업소 정화 효과도 기대됨
 - ▶ 유천동 성매매지역 단속 등으로 중리길에 불건전 업소가 유입 / 66개 업소 중 20여개가 주1~2회 영업중
 - ▶ 불건전업소 지도·단속 등과 더불어 주변 시설정비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

• 대상지 현황사진



[그림 5-11] 대덕구 중리길의 현황

□ 시범거리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안)

-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공간을 조성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거리의 규모 및 기타현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지표 작성
- 평가지표 (안)

<표 5-4> 시범거리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

구 분	내 용	평 가 점 수		
		상	중	하
도로규모	최소 도로폭			
낙후도	지역의 낙후도			
통행량	보행자 통행량			
사업효과	사업 추진 효과			
관련계획	추진 예정인 관련계획			

- 평가지표 세부설명

- 최소 도로폭

- ▶ 3.2m 이상의 도로폭이 확보되는 구간만을 대상지로 선정
- ▶ 3.2~3.4m 의 규모의 도로폭을 가지는 구간 : “하” 로 채점
- ▶ 3.5m이상의 규모 : “중” 으로 채점
- ▶ 도로폭이 3.5m 이상이면서, 자전거 도로 및 휴게공간 마련 등 시민 편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간 : “상” 으로 채점

- 지역의 낙후도

- ▶ 최근에 가로정비가 시행된 적이 있는 지역 : “하”
- ▶ 최근에 가로정비가 시행된 적이 없는 지역 : “중”
- ▶ 최근에 가로정비가 시행된 적이 없으며, 보행자 등 이용자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환경이라 판단되는 지역 : “상”

- 보행자 통행량

- ▶ 보행자를 유인할 요소가 그다지 많지 않는 지역 : “하”
- ▶ 거리를 이용하는 보행자수가 적절히 있으나, 버스 승강장 등과 연계되지 않으며, 통근·통학용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지역 : “중”
- ▶ 버스 승강장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주변의 상점 및 기타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판단되는 지역, 혹은 통근·통학용의 도로로 활용되는 경우 : “상”

- 사업 추진 효과

- ▶ 해당 대상지가 노약자, 장애인 및 일반인의 통행 등에 불편을 그다지 주고 있지 않는 비교적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의 기대효과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 : “하”
- ▶ 해당 대상지에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적어,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며, 사업 추진을 통해 어느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 “중”
- ▶ 해당 대상지가 노약자,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의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의 와 관련한 사업이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비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상”

- 추진 예정인 관련계획

- ▶ 해당 대상지와 관련하여 추진된 사업이 없는 경우 : “하”
- ▶ 해당 대상지와 관련한 사업이 있는 경우 : “중”
- ▶ 해당 대상지와 관련한 사업이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비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상”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6장 결론 및 제언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가족계획 사업의 강력한 추진과 더불어 1990년대 후반 이후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 독신 및 만혼의 증가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이로 인해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였고,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2000년에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한 도시인프라를 포함한 사회정책적인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인 도시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
-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에 대한 디자인(Ronald L. Mace)을 말하며,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또는 생애주기에 관련한 디자인(Design for the lifespan)이라고 함
-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힘써왔고 최근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이나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의 확대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기존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고령자 등 특정계층만을 고려한 특징이 있음. 즉 기존의 유니버설디자인이 방향이 일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도입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음
-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 후 2년을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증수여 현황을 돌아보면 인증을 취득한 대부분의 건축물 용도가 관공서 및 복지관과 같은 공공건물에 치중되어 있으며, 민간시설에서 인증을 취득하려는 노력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①보다 명확히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②외국의 선진도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정확히 분석하고, ③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추진을 위한 대전시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 및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원칙에 따라 대전시의 남녀노소, 다문화가정, 외국인, 거주하는 사람이나 방문객에 관계없이 모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조성하고, 모두가 공평한 인간중심의 도시를 추구함
- 대전시의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선도도시화의 정책에서는 “누구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를 만들어 가는 것을 비전으로 함
- 9대 중점추진과제는 행정적 과제와 민간적 과제로 구분하여, 행정적 과제로서는 ① 공공디자인과 연계, ② 특화가로와의 연계, ③ 도시마케팅과의 연계, ④ 지역경제 활성화, ⑤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들 수 있으며, 민간적 과제는 ⑥ 전문적 민간조직 결성, ⑦ 전문회사의 상품개발, ⑧ 언론사의 적극적 홍보, ⑨ 지역대학의 관련 프로그램 육성으로 구성됨
- 지원체계는 크게 6가지를 들 수 있는데 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기획, 제안제도 도입, ② 홍보 및 교육, ③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④ 조례제정 및 제도마련, ⑤ 민간시공에 대한 재정지원, ⑥ 지속적 사후관리 임
- 세부실천과제는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공공디자인 선도효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 유니버설 디자인이 공공시설 및 공간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또한 시민들의 그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디자인은 물론 민간 시공업체 시공능력, 결합·적용되어야 할 제품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로 됨

- 론 메이스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마케팅의 용어로서 정의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은 마케팅의 개념에 의한 한가지의 패키지다. 단순한 양식이 아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장이 아니라, 넓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서서 생각하려고 하는 마케팅의 언어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 특별한 것, 손잡이, 비싸다는 한정된 이미지만 갖고 있다.’ 라고 주장하여 도시마케팅과의 연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 한 바 큼
- ‘장애인에게 사용하기 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기 쉽다’ 라는 말이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마케팅 용어로써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단지 우연만은 아니고 충분한 준비로 ‘모두에게 사용하기 쉬운’ 성질을 필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추진되고 있어 분야별 인터페이스가 안 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워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유니버설디자인 마스터플랜’ 이 필요하며, 계획 수립 시는 민간인과 전문가들이 포함 되는 TF팀 구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됨
- 유니버설디자인 로드맵에 따라서 제1단계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행할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5가지 중점사항에서 검토하고 있음
- 대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주요사업 또는 계획별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앞서 계획의 범위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 고 문 헌

- 한국장애인개발원(200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사(2007), 장애물 없는 도시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1단계 연구
대전광역시(2008),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건축물,도로,공원,공공교통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건축설계 매뉴얼
안양시(2007), 안양시 공공디자인 기본구상
인천광역시(2009),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서울특별시(2006),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문화관광체육부(2008), 공공디자인 사업 가이드라인 계획(안)
한국토지공사(200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 및 심사기준
한국디자인진흥원(2006),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 -디자인 행정조직 구축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2008),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홈네트워크 주택유형 개발
서울시정개발원(2007),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교통의 배리어프리」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9),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요시히코 가와우치(2005), 유니버설디자인, 도서출판 선인
대전발전연구원(2008), 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2007), 유니버설 환경디자인, UDRC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2005),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이연숙(2008), 유니버설디자인-21세기 환경 및 제품디자인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연숙, 이성미(2007), 고령친화 혁신 디자인, 연세대학교 출판부
노무라 미도리(2009), 배리어프리 건축·도시 계획론, 건국대학교출판부
박종숙, 2001, 살기좋은 우리동네:상인들이 일군 문화의 거리, 월간국토 239호, 국토연구원
유승권 (2006), 도시마케팅의 이해, 한솜미디어
서울특별시(200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대구경북연구원(2007),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ちしゃきたけし(2008), 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のまちづくり, 森北出版株式會社
Stoshi Suzuki(2006), 道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 技報堂出版
都市景観研究会(2008), 日本の街を美しくする法制度・技術・技能
景観まちづくり研究会(2005), 景観法を活かす

부 록

부록 1. 교토시 미야코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조례

부록 2. 사람에게 친화적인 마을만들기 조례

부록 3. 대전시 BF인증 시설물 현황조사표

부록 4.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조사 설문지

부록 1.

교토시 미야코(도읍지)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조례

평성 17년(2005년) 3월 25일

조례 제 82호

연혁

교토시 미야코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조례

목차

전문

제1장 총칙(제1조 제9조)

제2장 미야코 유니버설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 시책(제10조 제 15조)

제3장 미야코 유니버설 디자인 심의회(제16조 제 18조)

제4장 잡칙(제19조)

부칙

교토에서는 긴 역사동안 양성된 서로 지지하는 정신, 예술, 기술 등의 교토가 가지는 다양하고 풍부한 축적에 의하여, 개성이 풍부하고 선구적인 생활문화를 살린 활력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 왔다. 이러한 교토가, 정보화,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및 그 외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장래에도 활력있는 사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다양한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 시에서는 자치의 전통, 대접의 마음, 만들기의 문화 및 그 외의 교토 고유의 문화를 살리면서, 고령자나 장애인의 사회참가에의 지원,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정비, 건축물의 배리어프리의 촉진 및 그 외의 다양한 사상이나 삶의 방식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한 걸음을 진행시켜 왔다.

그 걸음을 보다 강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교토가 가지는 다양하고 풍부한 축적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채용하여 연령, 성별, 언어, 습관, 심신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능한 한 생활하기 쉬운 사회환경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본 시는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되어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여유있게 사는 보람을 가지고 안심하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장래에도 활력으로 가득 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결의하며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하여 기본이념, 본 시 및 사업자의 책무, 시민 및 관광 여행자 그 외의 체재자의 역할 및 그 외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통해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서 드는 용어의 의미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것에 따름

(1)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

긴 역사 속에서 양성해져 온 서로 지지하는 정신, 예술, 기술 등의 교토가 가지는 다양하고 풍부한 축적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채용한 사회환경의 정비(제품의 제조 및 정보의 전달 그 외의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설비, 시설 및 건축물 그 외의 공작물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능한 한 이용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각을 말한다.

(3) 시민

본 시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 해당 구역 내에 소재한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 해당 구역 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자 및 공익 활동(자원봉사 활동 그 외의 불특정 한편 다수의 사람의 이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음)을 실시하는 자이며 본 시의 구역 내를 주된 활동의 장소로 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은 다음에서 드는 사항에 유의해 행해져야 한다.

- (1)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 (2) 건강의 보호, 유지, 증진 및 그 외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
- (3)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는 것.
- (4) 환경을 배려하는 것.
- (5)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처에 협조하는 것.

(지침)

제4조

1. 시장은 전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지침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 (1)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 (2)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책
 - (3) 전 2호에서 드는 것 이외의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시장은 지침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제16조에 규정하는 심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과 동시에, 사업자 및 시민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시장은 지침을 정했을 때는 신속하게 이것을 공포해야 한다.
5. 전 2항의 규정은 지침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6. 시장은 매년, 지침에 근거해 강구하는 시책의 실시상황을 공포해야 한다.
7. 시장은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항상 지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본 시의 책무)

제5조

본 시는 다음의 책무를 가진다.

- (1) 지침에 근거해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는 것.
- (2)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본 시의 시책에의 사업자, 시민 및 관광여행자 및 그 외의 체재자의 참가 및 협력을 촉진하고, 이러한 사람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시키는 것.
- (3) 사업자 및 시민에 의한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사업자의 책무)

제6조

사업자는 다음의 책무를 가진다.

- (1)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해 깊게 이해할 것
- (2) 지침에 근거해 주체적 한편 적극적으로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할 것.
- (3)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본 시, 시민 및 관광여행자 및 그 외의 체재자의 의견을 사업자의 대처에 적절히 반영시킬 것.
- (4)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본 시의 시책에 협력할 것.

(시민의 역할)

제7조

시민은 다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완수한다.

- (1)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해 깊은 이해할 것.
- (2)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기여할 것.

(관광 여행자 그 외의 체재자의 역할)

제8조

관광 여행자 및 그 외의 체재자는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깊은 이해를 하고, 그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한다.

(상호의 협력등)

제9조

본 시, 사업자, 시민, 관광 여행자 및 그 외의 체재자, 공익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 그 외의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침에 근거하여, 상호 그 완수할 역할을 이해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보완한다.

제2장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 시책

(시책의 실시 체제의 정비)

제10조

본 시는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기 위한 조치)

제11조

본 시는 홍보활동, 계발활동 및 그 외의 활동에 충실히 임하는 것에 의해 사업자, 시민 및 관광 여행자 그 외의 체재자가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기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 및 학습의 진흥)

제12조

본 시는 직장, 지역 및 그 외의 여러가지 장소에 있어서,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재의 육성 및 파견 등)

제13조

1. 본 시는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을 담당하는 실천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지는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본 시는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전항의 인재의 파견 및 그 외의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한다.

(조사 연구)

제14조

1. 본 시는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본 시는 전항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제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및 다른 지방공공단체와의 제휴)

제15조

1. 본 시는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 및 다른 지방공공단체와의 제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장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 심의회

(심의회)

제16조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조사 및 심의함과 동시에, 해당 사항에 대해 시장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교토시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심의회외의 조직)

제17조

1. 심의회는 위원 25명 이내로 조직 한다.
2. 위원은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그 외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

제18조

1. 위원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4장 잡칙

(위임)

제19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계된 필요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평성 17년(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사람에게 친화적인 (이하 인간친화) 마을만들기 조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인간친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되어 스스로의 의사에 근거해 자유롭게 행동하고,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확보되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촉진하여 현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것에 따름.

(1) 인간친화 마을만들기

장해의 유무,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및 사회환경을 정비해 나가기 위한 대처를 말한다.

(2) 공공적 시설

의료시설, 상업시설, 관공청시설, 숙박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문화시설, 공공교통기관의 시설, 도로, 공원 그 외의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 공공적 시설

공공적 시설 중에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촉진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 차량 등

일반 여객용으로 제공하는 철도의 차량, 자동차 및 선박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 공작물

안내 표지, 신호기, 버스의 정류소 그 외의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는 공작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시설 등

공공적 시설, 공공 차량 등 , 공공 공작물 및 주택을 말한다.

(현의 책무)

제3조

1. 현은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관한 기본적 혹은,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또한 이것을 실시한다.
2. 현은 전항의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있어서 시읍면과의 긴밀한 제휴에 노력한다.
3. 현은 스스로 설치하고 또한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한다.
4. 현은 스스로 현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시읍면의 역할)

제4조

1. 시읍면은 해당 시읍면의 상황에 따라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현이 실시하는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시읍면은 스스로 설치하고, 또한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노력한다.
3. 시읍면은 스스로 주민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로 대하여, 모든 사람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사업자의 책무)

제5조

1.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의 실시에 임하여 스스로 설치하고 또한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노력한다.
2.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의 실시에 임하여 스스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3.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의 실시에 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로 대해서 모든 사람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4. 사업자는 현 및 시읍면이 실시하는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한다.

(현민 등의 책무)

제6조

1. 현민은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스스로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의 추진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현 및 시읍면이 실시하는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한다.
2.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된 시설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종합적 추진)

제7조

1. 현, 시읍면, 사업자 및 현민은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관한 각각의 책무 또는 역할을 자각하면서 일체가 되어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의 추진에 노력한다.
2. 현 및 시읍면은 도로, 공원 그 외의 시설의 신설 및 수선사업 및 그 외의 사업의 기회에 있어서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이바지하는 시설 등의 정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관한 시책

(시책의 기본방침)

제8조

현은 다음의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 (1) 모든 현민이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깊게 이해하고 자주적 및 적극적으로 이것에 임하도록 현민의식의 고양을 도모할 것.
- (2)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의 정비를 촉진할 것.

(추진 지침의 책정)

제9조

1. 지사는 전조의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에 관한 추진 지침

(이하 「추진 지침」이라고 한다.)을 책정한다.

2. 지사는 추진 지침을 책정하는 것에 있어서 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와테현 인간친화 마을만들기 추진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3. 지사는 추진 지침을 책정했을 때는 이것을 공포하는 것으로 한다.
4. 전 2항의 규정은 추진 지침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사업자 및 현민의 자주적인 대처의 촉진)

제10조

1. 현은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사업자 및 현민의 깊은 이해와 그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 및 그 외의 계발활동을 실시한다.
2. 현은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의 추진에 관하여 현저한 공적에 대해 표창한다.

(교육의 충실 등)

제11조

1. 현은 차세대를 담당하는 아이들이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대해 깊게 이해하기 위한 교육의 충실을 도모한다.
2. 현은 현민이 생애를 통해서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그 기회의 충실을 도모한다.

(정보의 제공 등)

제12조

1. 현은 시읍면, 사업자 및 현민에 대해 인간친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 기술적 지도 및 조언한다.
2. 현은 모든 사람이 원활히 정보를 이용하고 또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수단의 충실을 기함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인재의 육성)

제13조

현은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가지는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활동의 촉진)

제14조

현은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관한 자원봉사 활동 및 그 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조사 및 연구)

제15조

현은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촉진하고, 그 성과의 보급을 도모한다.

(재정상의 조치)

제16조

현은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의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공공적 시설의 정비 등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 등)

제17조

1. 지사는 공공적 시설의 불특정 한편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의 일부분의 구조 및 설비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이하 「공공적 시설정비기준」이라고 한다.)을 규칙으로 정한다.
2. 지사는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 외 모든 사람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히 공공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목표가 되는 기준을 정해 해당 목표가 되는 기준에 적합한 공공적 시설의 정비가 촉진되도록 그 보급 계발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의 적합)

제18조

1. 공공적 시설을 설치,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공적 시설의 설치자등」이라고 한다.)은, 해당 공공적 시설이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
2. 기존의 공공적 시설을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은 해당 공공적 시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 시킬 수 없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인간친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것을 대신 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지 보전)

제19조

공공적 시설의 설치자 등은 공공적 시설정비 기준에 적합한 부분의 기능이 유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견 청취)

제20조

특정 공공적 시설의 신축, 신설, 증축 또는 개축(이하 「신축 등」이라고 한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 시키기 위해서 강구하려는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특정 공공적 시설의 이용이 전망되는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정 공공적 시설의 신축 등의 협의)

제21조

1. 특정 공공적 시설의 신축 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특정 공공적 시설로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특정 공공적 시설 정비주」라고 한다.)은 해당 신축 등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 시켜야 할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다.)과 관련되는 특정 공공적 시설을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 시키기 위해서 강구하려고 하는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서 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91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 1항에 규정된 계획의 인정을 신청했을 때는 이것에 한하여 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협의의 내용의 변경(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다.)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준용한다.

(지도, 조언 등)

제22조

1. 지사는 전조 제 1항(동조 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해당 협의와 관련되는 특정 공공적 시설이 공공적 시설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협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조언 및 지도 또는 권고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지사는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와 관련되는 특정 공공적 시설이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해당 특정 공공적 시설이 제17조 제2항의 목표가 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목표가 되는 기준에 적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목표가 되는 기준에 적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3. 지사는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끝냈을 때는 해당 협의에 의해 강구하도록 된 조치내용이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 및 부적합 한지를 해당 협의자에게 통지한다.

(공사 완료의 신고)

제23조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사람은, 해당 협의와 관련되는 공사를 완료했을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신속하게 그 취지를 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완료 검사)

제24조

1. 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해당 신고와 관련된 특정 공공적 시설의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있어서,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관련되는 특정 공공적 시설이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적합증」 이라고 한다.)를 교부한다.

(권고)

제25조

1. 지사는 특정 공공적 시설 정비주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고 특정 공공적 시설의 신축 등의 공사에 착수 및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특정 공공적 시설로 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해당 협의를 실시하도록 또는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지사는 제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사람이 해당 협의와 관련되는 공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있어서, 해당 공사가 해당 협의의 내용과 다르거나 해당 협의와 관련되는 특정 공공적 시설이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 대해, 해당 협의의 내용에 따른 공사를 실시해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공표)

제26조

지사는 제22조 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고 해당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해당 권고의 내용 및 그 외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사는 미리 해당 권고를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적합 상황의 파악 등)

제27조

1.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 공공적 시설을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하 「특정 공공적 시설의 소유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해당 특정 공공적 시설의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보고와 관련되는 특정 공공적 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 공공적 시설을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기재한 서면(이하 「정비 계획」이라고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 계획의 제출이 있을 때는 해당 보고 또는 해당 제출과 관련되는 특정 공공적 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출입 조사 등)

제28조

1. 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특정 공공적 시설 정비주 혹은 특정 공공적 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특정 공공적 시설 혹은 특정 공공적 시설의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의 적합 상황을 조사 혹은 관계인에 대해 질문시킬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출입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

(적합증의 교부 및 공표)

제29조

1. 공공적 시설의 설치자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지사에게 적합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사는 전항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해당 청구와 관련되는 공공적 시설이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해당 청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적합증을 교부한다.
3. 지사는 제24조 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증을 교부했을 때는 적합증을 교부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 해당 교부와 관련된 공공적 시설이 공공적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한지를 공표한다.
4. 제24조 제2항 및 전3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적합증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공 차량등과 관련되는 조치)

제30조

1. 공공 차량 등을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은, 해당 공공 차량 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2.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 차량 등을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공공 차량등과 관련된 전항의 조치의 상황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보고를 요구 혹은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공공 공작물과 관련되는 조치)

제31조

1. 공공 공작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은 해당 공공 공작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2. 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 공작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 공공 공작물과 관련된 전항의 조치의 상황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보고를 요구 혹은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주택과 관련되는 조치)

제32조

1.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된 주택의 공급에 노력한다.
2. 현민은 그 소유하는 주택에 도착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신체 기능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노력한다.

제4장 특별 특정 건축물에 추가하는 특정 건축물 등

(특별 특정 건축물에 추가하는 특정 건축물)

제33조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특별 특정 건축물(법 제2조 제17호에 규정하는 특별 특정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제7항에 대하여 같음)에 학교 교육법(쇼와 22년[1947년] 법률 제26호)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유치원 및 특별 지원 학교를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특별 특정 건축물의 규모)

제34조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축(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성18년 정령 제379호) 제5조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서 드는 것(아동 후생 시설(아동복지법(쇼와 22년[1947년] 법률 제164호)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아동 후생 시설을 말한다.)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의 규모는 바닥 면적(증축 혹은 개축 또는 용도의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증축 혹은 개축 또는 용도의 변경과 관련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1,000평방미터로 한다.

제5장 이와테현 인간친화 마을만들기 추진 협의회

(설치)

제35조

1. 인간친화 마을만들기의 추진에 관계되어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지사의 자문 기관으로서 이와테현 인간친화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고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심의 이외에 이 조례의 실시에 관계된 지사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조직)

제36조

1. 협의회는 위원 30명 이내로 조직 한다.
2. 위원은 현민, 사업자,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및 그 외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지사가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있어서의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회장 및 부회장)

1. 제37조협의회에 회장 및 부회장 1명을 두어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2.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불참하였을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회의)

제38조

1. 협의회는 지사가 소집한다.
2. 협의회는 위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
3. 협의회 의사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가부가 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사무)

제39조

협의회의 사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한다.

(회장에게의 위임)

제40조

이 장에 정하는 것 이외, 협회회의 운영에 관계된 필요사항은 회장이 협회회의와 상의하여 정한다.

제6장 잡칙

(국가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

1. 국가, 지방공공단체 그 외 규칙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제21조로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 2항 및 제31조 제 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사는 국가 등에 대해 공공적 시설, 공공 차량 등 및 공공 공작물에 있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상황 및 그 외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청을 실시할 수 있다.

(시읍면의 조례와의 관계)

제42조

공공적 시설의 정비에 관해서는 시읍면의 조례에 의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정비와 동등 이상의 정비를 도모할 수 있다고 지사가 인정할 때는, 해당 시읍면의 구역에 있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칙)

제43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 이 조례의 실시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지사가 정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조례는 평성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제4장, 제41조, 제42조 및 부칙 제 3항으로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조례에 의한 개정 전의 인간친화 마을만들기 조례(이하 「구조례」라고 한다.) 제3장 및 제20조의 규정은 평성 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그 효력을 가진다.
3. 이 조례에 의한 개정 후의 인간친화 마을만들기 조례(이하 「신조례」라고 한다.) 제3장의 규정은, 평성 20년 7월 1일 이후에 공사에 착수하는 특정 공공적 시설의 신축 등에 대해 적용하고, 동일 전에 공사에 착수한 특정 공공적 시설의 신축등에 대해서는 계속 종전의 예에 의한다.
4. 제3장의 규정의 시행일 전에 실시된 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장의 규정의 시행시 아직 공사에 착수하고 있지 않는 특정 공공적 시설의 신축등과 관련되는 것은, 신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로 간주해 동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제3장의 규정의 시행 시 실제로 구조례 제17조 제1항(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더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적합증의 교부의 청구는 신조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된 적합증의 교부의 청구로 간주한다.
6. 제3장의 규정의 시행일 전에 구조례 제17조 제2항(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더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교부된 적합증은 신조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제4장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 공사 중의 특별 특정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동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록 3.

Barrier Free 인증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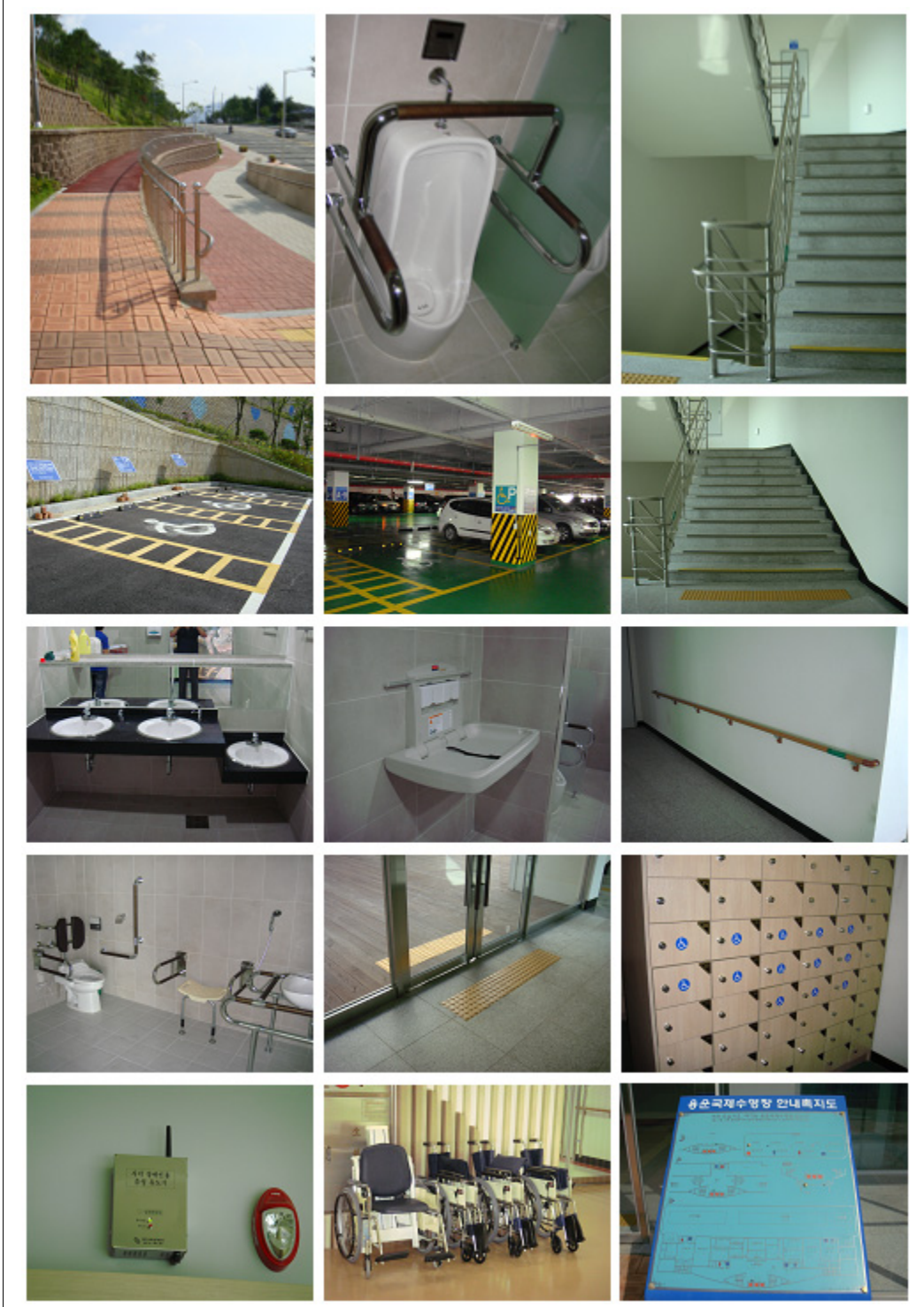
● 시설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산12-2번지						
사	업	기	간	2007. 12. ~ 2009. 8.	준	공	일	2009. 8. 12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17,515㎡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사	업	비	313억원					

● 현황분석

- 유아용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대여 휠체어 비치하고 있음
- 안내촉지도 출입구 마다 설치 되어있음
- 샤워실 장애인 높이를 배려한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음
-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 국제적 스포츠행사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전국체전의 행사장으로 활용된 만큼 시설설치는 우수하다고 판단됨

현황사진



시설명	한밭종합운동장(체육회관)
-----	---------------



● 시설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62-1번지 일원						
사	업	기	간	2007. 12. 11 ~ 2009. 9. 1	준	공	일	2009. 9. 1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 연면적 2,830㎡						
용	도	운동시설						
사	업	비	492억원					

●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안내표지와 시설별 유도표시(점자블럭 등) 전혀 없음 -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은 잘 갖추고 있음 - 휠체어 사용시 루프가 길게 되어 있어 다소 불편할 것으로 판단됨
--

현황사진





● 시설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번지/대전엑스포과학공원내	
사	업	기간	준공일
		2008. 6 ~ 2010. 10.	2010. 10월
규	모	연면적 17,130㎡(지하2, 지상4층)	
용	도	대전CT센터	
사	업	비	309억원(국비 154.5, 시비 154.5)

● 현황분석

<p>현재 공사중</p>

시설명	유성구 노은1동 주민센터
-----	---------------



● 시설개요

위 치	유성구 노은동 546번지		
사 업 기 간	2004.10.14 - 2005.10.21.	준 공 일	2005.10.21.
규 모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631㎡		
용 도	공공업무시설		
사 업 비			

● 현황분석

-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현재 한곳만 있으며, 동선연계 표시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회의실 2층 강당 장애인용 통행로는 사이즈 관련 수리중이었음
- 화장실 안내표지는 인증관련으로 이중 설치되어있음
- 화장실내부는 센서설치로 이용자에게 안내방송 및 음악으로 쾌적성을 줌
- 유아를 위한 편의시설(기저귀교환대, 모유수유실 등)전혀 없음
- 핸드레일 또한 인증을 위해 추후 시공으로 기존 핸드레일과 높이가 비슷함
- 전반적으로 종합안내도 및 주변안내도에는 외국인을 배려한 영문은 없음
- 자동문까지의 장애인 유도 안내표시는 없음
- 부분적으로 발판 등에 의해 점자블럭을 가린곳이 있어 시각장애인 이용에 불편을 줌

현황사진



시설명	대덕구 노인종합 복지회관
-----	---------------



● 시설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참새골길 30		
사 업 기 간		준 공 일	2007. 12. 11
규 모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1,497.35㎡		
용 도	노유자 시설		
사 업 비			

●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이중 핸드레일 설치되어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설치되어있음 - 장애인 전용 화장실 따로 설치되어있음 - 일반화장실에 경우 주 사용자인 노인분을 위한 손잡이나 안전시설이 전혀 없음 - 식당 또한 안전시설이 전혀 없음 - 주출입구 이외 외부에는 안전시설이 없음 - 전반적으로 관리 소홀로 인해 파기나 훼손된 곳이 많음
--

현황사진





● 시설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518-2		
사 업 기 간		준 공 일	2008. 01. 07
규 모	지하1층 / 지상3층, 연면적 2,546.78㎡		
용 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관)		
사 업 비			

●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이중 핸드레일 설치되어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설치되어있음 - 장애인 전용 화장실 따로 설치되어있음 - 주출입구 유도 점자블록 설치되어있음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경사로 잘 정비되어 있음 -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

현황사진



시설명	장애인 근로사업장
-----	-----------



● 시설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77-5번지		
사 업 기 간	2009.08.18 ~ 2010.08.12	준 공 일	2010. 08. 12
규 모	지하1층, 지상1~2층 / 연면적 4,078㎡		
용 도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및 공장		
사 업 비	66.8억원		

● 현황분석

<p>현재 공사중</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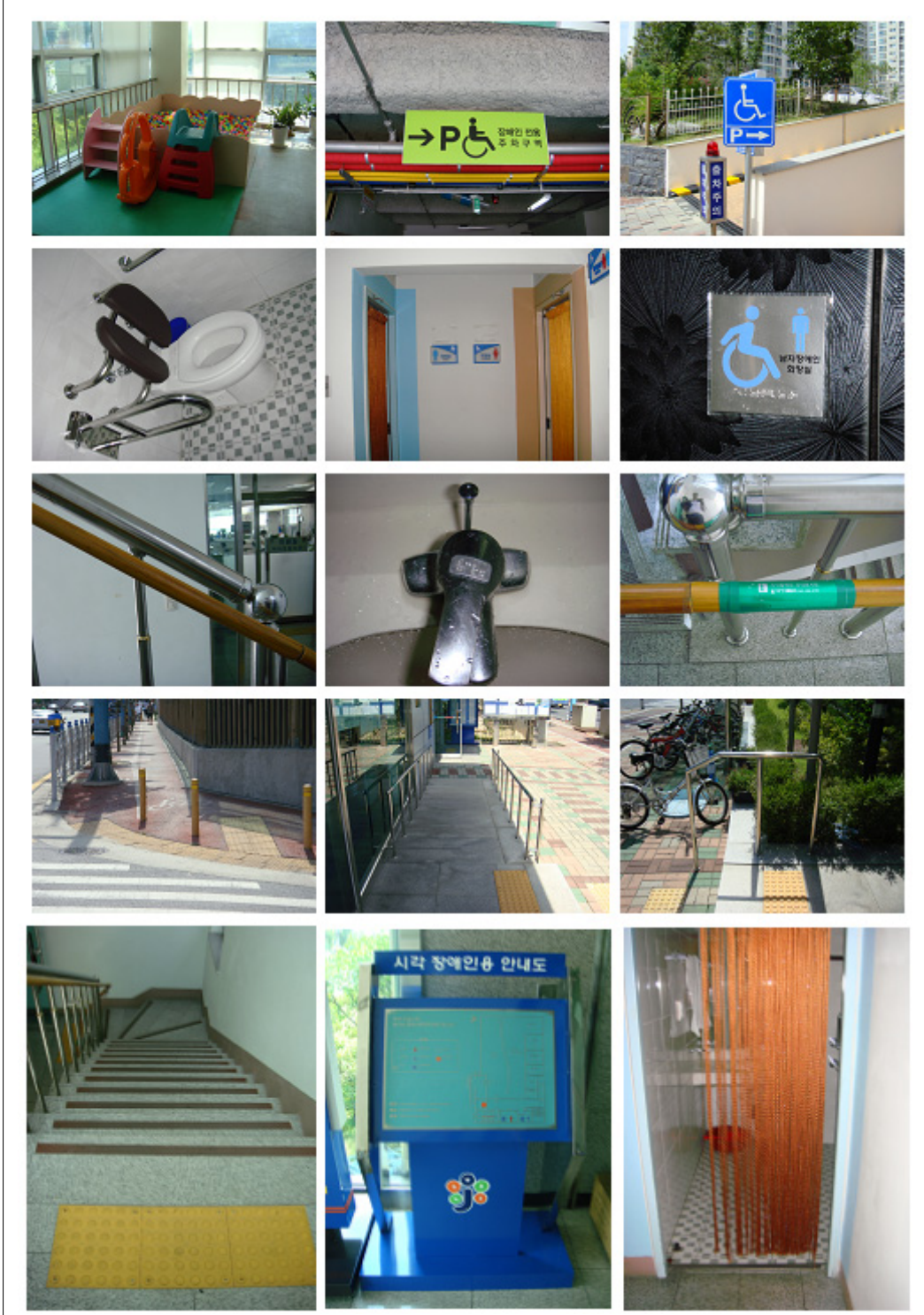
● 시설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176(문화동 284-169)		
사 업 기 간		준 공 일	2006.12.29.
규 모	지하1층 / 지상 4층 연면적 2,360.32㎡		
용 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사 업 비	3,300백만원		

● 현황분석

- 장애인 전용 주차장 1곳 운영중
- 전반적으로 안내표지는 외국인을 배려한 영문표기, 유도표시(점자블럭) 없음
- 핸드레일 인증관련 추후 시공으로 기존과의 높이가 비슷
- 점자블록의 다소 어수선하게 설치되어 동선이 불편임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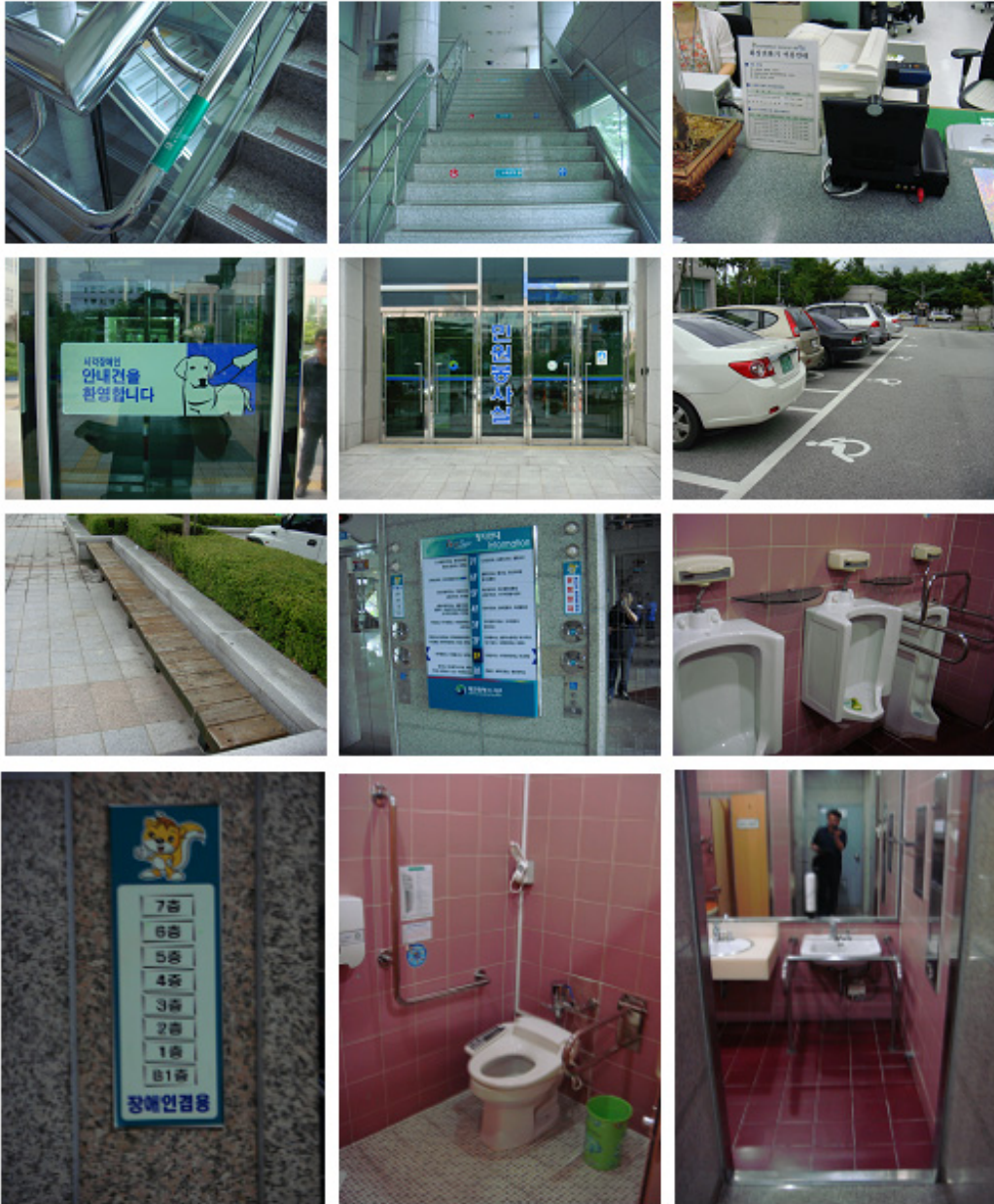
● 시설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반월길 46		
사 업 기 간		준 공 일	2002. 6.
규 모	지하1층, 지상7층(연면적 : 30,117.19㎡)		
용 도	공공업무시설		
사 업 비			

●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시설은 주출입구에만 설치되어있고 유도동선이 미흡함 - 외국인을 고려한 안내도는 전혀 없음 - 경사로난간은 한쪽만 이중 핸드레일이 설치되어있어 충돌우려가 있음
--	---

현황사진





● 시설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820 일원		
사 업 기 간	2005. 10 ~ 2007. 3	준 공 일	2007. 3
규 모	지하 2층, 연면적 5,690㎡		
용 도	대합실 및 승강장		
사 업 비			

● 현황분석

- 승차권발매기 점자 없음 (우대권 발매로 장애인은 발매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음)
- 계단 미끄럼방지 미부착
- 단차에 의한 습기로 인해 미끄럼 유발
- 출입구는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출입구 유도 정책이 전혀 없음 (승강장이나 출입구 유도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 의자 배치는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 자판기 또한 장애인은 전혀 사용이 어려운 실정
- 출입구 외부 주변 배수구 덮개와 장애인을 유도할수 있는 시설 미흡

현황사진





● 시설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19					
사	업	기	간	준	공	일	2008.1.10
규	모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29,304.99㎡					
용	도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 전시장)					
사	업	비					

●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화장실은 1층과 2층 각각 한 곳씩 설치되어있음 - 장애인전용화장실 문 스위치와 전등 스위치가 따로 분류되어있어 다소 불편함 - 여자화장실 경우 유아를 위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경사로 이중핸들레일 설치되어있으며 비상계단에도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 안내시스템의 경우 음성안내시스템은 없으며 외국인을 배려한 영문표기는 없음 - 계단 미끄럼방지 시설 없음 - 물품보관함 또한 외국인은 사용하기 어려움 - 전체적으로 외국인을 배려한 시설이 많이 부족함

현황사진





● 시설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454-3		
사 업 기 간	2010. 1. ~ 2010. 12.	준 공 일	2005. 1. 14.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88.58㎡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사 업 비	40백만원		

●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적절함 - 소변기에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시설 없음 - 장애인화장실은 관리소홀로 창고에 가까움 - 대여 휠체어 비치하고 있음 - 시각적인 공간으로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은 없음(점자 등)

현황사진



시설명	대덕종합사회복지관
-----	-----------



● 시설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48-2					
사	업	기	간	준	공	일	2001. 02. 23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78.43m ²					
용	도	복지시설					
사	업	비					

●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레일과 벽과의 간격이 좁아 다칠 우려가 있음 - 화장실등 외부출입 계단등 경사로 설치로 장애인을 배려함 - 대여 휠체어 비치하고 있음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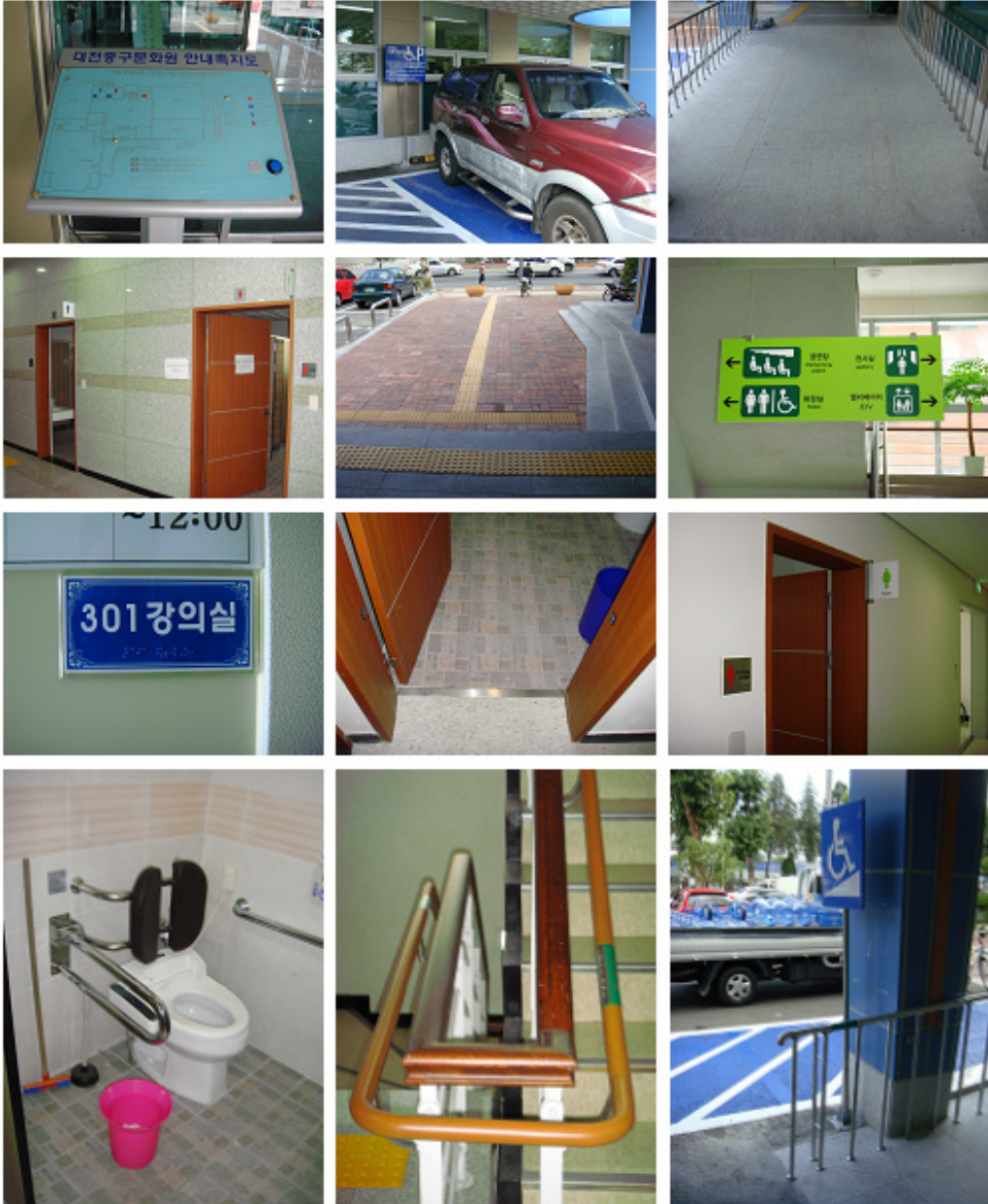
● 시설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21(대흥동448번지)	
사	업	기	간
		준	공 일
			1974.09.07 (2009.02.26) (대수선 및 용도변경)
규	모	지하1층 / 지상 4층 연면적 2,858.75㎡	
용	도	교육연구시설 외 1(문화 및 집회시설)	
사	업	비	

● 현황분석

- 입구안내표지 외국인을 위한 영문표기는 없음
- 화장실 안내표지 중복 많음 3개씩
- 화장실 안내표지 색채 불일치
- 화장실 입구센서로 짐·소등 관리하고 있음
- 유아를 위한 편의시설(기저귀교환대, 모유수유실 등)전혀 없음
- 핸드레일 추후 설치로 기존 핸드레일과 높이가 비슷함

현황사진



부록 4.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조사 설문지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시민인식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산하의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고찰은 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 될 것이며,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외로만 이용되고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8월

대전광역시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 (042) 530~3568
 담당자 : 연구위원 이형복 Fax.(042) 530~3528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 불린다.

【문1】 대전광역시는 2008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지향하면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청사는 국내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본 인증 1호(1등급)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잘 안다. ② 잘 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문2】 대전광역시가 지향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정책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의 대전광역시시 도시수준을 고려하여)

- ① 매우 필요한 정책이며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② 필요하기는 하나 잠진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이다.
 ③ 유사규모 도시 수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④ 지금은 불필요한 정책이다.

【문2-1】 대전광역시가 지향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 문2에서 ④번에 응답하신 분은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 ① 예산확보 ② 시민 및 학생대상의 관련 각종교육 ③ 관련 조례 및 제도마련
 ④ 정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 ⑤ 관련 전문가 육성 ⑥ 기 타 ()

【문3】 해당 시설이 유니버설디자인(배리어프리디자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히 적용되었다. ② 조금 적용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문4】 해당 시설에서 유니버설디자인(배리어프리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다목적 화장실 공간, 수유를 위한 공간, 외국인을 위한 안내체계 등 ()

【문5】 공공시설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시설의 확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② 점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 ③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 ④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 ⑤ 기 타 ()

【문6】 공공시설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나 자신이 이용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② 내 가족이나 친지들,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내가 미래에 고령자가 되거나 일시적 장애를 가지게 될 경우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④ 미래 후손의 이용을 고려하여서 지금부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⑤ 우리도시의 이미지 향상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도시로 성장)
- ⑥ 기 타 ()

【문7】 최근 우리도시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외국인 및 외국인들이 생활하기에 유니버설디자인측면에서 대전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도시환경 측면에서 충분히 편리한 도시라고 생각된다.
- ②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③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예산투입 등의 적극적 시책을 추진이 필요하다.
- ④ 매우 불편한 도시이고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 ⑤ 기 타 ()

【문8】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측면에서 장애인화장실을 다목적화장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화장실을 현재는 장애인만 사용하지만, 다목적화장실로 변경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어 공간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 ① 적극 동의하며 빠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② 일반인은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공간임을 홍보 또는 교육 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공간이므로 변경은 불필요하다.
- ④ 잘 모르겠다.

【 기본정보 】

1. 귀하는 대전시민이십니까?

- ① 대전시민 ② 타지역 시민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3. 귀하의 해당 연령대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⑧ 80대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 ② 자영업 ③ 서비스직 ④ 사무직 ⑤ 전문직 ⑥ 단순노무직 ⑦ 무직 ⑧ 기타

5. 귀하는 장애인 또는 노약자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책연구보고서 2010-08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화를 위한 정책연구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0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28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 160-20)
전화 : (042)530-3500 팩스 :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본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 및 대전발전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http://www.djdi.re.kr>